



# VI

## 학생생활

### ■ 성신교정

1. 학생회 회칙
2. 장학금 지급규정

### ■ 성심교정

1. 총학생회 회칙
2. 학생과외활동
3. 학생상벌규정
4. 장학금
5. 학생병사안내
6. 의료복지제도

### ■ 성의교정

1. 학생준칙
2. 학생준칙 시행세칙
3. 장학금
4. 학생병사안내
5. 의료복지제도



# 성신교정

## 1. 학생회 회칙

### 전 문(前文)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생회」는 진리·사랑·봉사라는 교육이념에 따라 사제(司祭)요, 스승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적(知的), 사목적, 영성적으로 준비된 참된 목자와 평신도(平信徒) 지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 구원(救援)과 인간의 존엄성을 전하는 보편 교회에 일익(一翼)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 회칙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통한 진리 탐구와 복음화를 위한 실천적 신앙 성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會員)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재학생(在學生)으로, 대학원생(大學院生)을 제외한 학부생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選舉權)과 피선거권(被選舉權)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自治)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또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학교 운영에 참여) 본회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 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도교수) 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문(咨文)을 구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두며, 그 직무는 교학부처장 교수의 당연직으로 한다.

### 제 2 장 학생총회

제8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최고 기구이다.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권한) 학생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사업 계획 및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본 회의 존립(存立)이나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결권(議決權)을 갖는다.

제12조(회의) 1. (구분)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운영한다.

2. (의사정족수) 학생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이나 집행부의 발의 또는 회원 1/5 이상의 발의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6. (총회공고) 학생총회 소집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임시총회 소집시는 2일 이상 공고한다.

제13조(회원 전체 투표) 본 회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事案)이 발생(發生)할 경우, 학생총회와 별도로 학생회장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회원 전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과반수 투표 참가와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4조(지위)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제15조(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자치 활동과 학술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대표로서 본 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학생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4. 집행부의 부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5. 본 회 회원의 중의(衆意)를 대표(代表)하여 학생 자치(自治) 활동에 관계(關係)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학생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중 본 직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8. 본 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새로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포한다.
9. 집행부의 의장으로 각 부서는 물론 통학생회에 대한 회계 및 행정 감사를 할 수 있다.
10.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11. 본 회의 중대한 사항을 회원 전체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집행부에 관여한다.
2. 학생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의 유고기간동안 그 권한(權限)과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며,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제17조(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유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유고시 총무부장이 임시 대표를 맡고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當選者) 공고일 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단, 이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임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해당 년 취임일(就任日)부터 익년(翌年) 이임일(移任日)까지로 한다.

## 제 4 장 집행부

제19조(지위) 집행부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0조(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학생회장, 부장, 차장 및 통학생부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제21조(부장 및 차장) 1. (임무) 집행부의 각 부장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관장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2. (선출) 집행부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선출은 학생회장 취임년도의 3학년 재학생 중에서 학생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총회에 업무계획(業務計劃) 및 활동계획을 보고(報告)하고 그에 따른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활동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3. 본 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特別)기구를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부서(部署)의 증설이나 폐지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직 : 집행부서의 업무) 집행부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본 회의 사무·회계·운영·기획 및 조정(調定)에 관한 업무와 집행부와 자치기구의 재정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부 : 본 회의 행사 기획·운영·조정(調定)에 관한 업무와 집행부 및 자치기구의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부 : 홍보부는 기획부의 산하로 두며 본회 제반 업무에 관한 홍보와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4.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 : 동아리들을 대표하는 부서로서 학술제를 담당하며, 제39조에 의거하여 동아리를 설립, 폐부한다.
5. 신학원부 : 신학원과 연계하여 과학부, 문화부, 체육부, 학술부로 나누어서 신학원과 협조, 보조해야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통학생부 : 본회와 관련된 자치(自治)기구인 통학생부의 운영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의견조율(意見調律)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4조(회의) 1. (구분) 집행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2. (정기 집행부회의) 정기 집행부회의는 월 2회로 한다.
3. (임시 집행부회의) 임시 집행부회의는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 또는 2인 이상의 부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4. (참관) 집행부 회의는 회원의 자유로운 참관(參觀)이 허락되나, 특별한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제 5 장 통학생부

제25조(지위) 통학생부는 학생회장 직속에 있으며 전체 통학생들의 의결, 집행, 운영기구이다.

제26조(목적) 통학생(通學生)들의 원활한 학내생활을 지원하며 상호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배움과 친교의 생활을 조화시킴으로써 인간적, 그리스도인적 성숙을 도모하며 본 회를 이해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구성)

1. 통학생부는 고유한 특성의 구성원들을 고려해 그 산하에 대표와 총무, 수사부, 수녀부, 일반 통학생부를 둔다.
2. 통학생부 대표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사 및 수녀, 일반 통학생으로 선출된다.
3. 수사학생부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도회 소속 남학생으로 구성된다.
4. 수녀학생부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도회 소속 여학생으로 구성된다.
5. 일반통학생부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 통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8조(임원) 통학생부의 임원은 전체대표 1인과 총무 1인, 수녀부 대표 1인, 수사부 대표 1인, 일반통학생부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1. 전체대표 : 통학생부를 대표(代表)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계획 및 통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체총무 : 통학생부의 전반적(全般的)인 실무(實務) 및 재정을 담당(擔當)하며, 각 회에서 제출한 예·결산을 취합(聚合), 관리한다.

3. 일반통학생부 대표 : 일반통학생부를 대표하고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수사부 대표 : 수사부를 대표하고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수녀부 대표 : 수녀부를 대표하고 수녀학생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본 회 내에서의 업무 및 지위) 1. 전체대표, 전체총무와 통학생부 대표 3인(수녀부, 수사부, 일반통학생부 대표)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본 회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통학생 전체대표, 전체총무, 통학생부 대표 3인(수녀부, 수사부, 일반통학생부 대표)은 통학생부 대표단(代表團) 3인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집행부(執行部)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제31조(임원선거) 통학생부 산하의 대표와 총무, 수사부 대표와 수녀부 대표와 일반 통학생부 대표는 학생회장 선출 당해 3학년 재학생중 학생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단 수사부 대표는 당해 2학년도 가능하다.

## 제 6 장 재 정

제32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부터 익년(翌年) 2월까지로 정하되 매학기 구분한다.

제34조(예산편성, 심의 및 집행) 1. 본 회의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編成)하고 회장단에서 조정하며 집행부 회의를 통해 심의 확정 의결한다.

2. 예산안 의결 이전에 불가피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부의 예산안 의결이 늦어질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가감(加減)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비) 본 회의 회비(會費)는 집행부에서 심의 확정하며,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이유(理由)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회비를 납부한다.

제36조(결산) 1. 본 회의 회비에 대한 결산은 총무(總務)부장이 대표(代表)로 하여 총괄적(總括的)인 결산을 집행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2. 집행부는 매학기 초 예산의 집행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그 결산을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 제 7 장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

제37조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 신설과 명칭) 1. 기존 동아리 연합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동아리 연합회 회칙은 폐지된다.

2. 개별 동아리들을 대표하는 기구는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이하 동아리 기획부라함)에 위임된다.

제38조 (동아리 기획부 소속과 부장의 권한) 1. 동아리 기획부는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학생회에 속한다.

2. 동아리 기획부는 학술제를 담당한다.

3. 동아리 기획부 부장은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 (등록동아리 목적과 성격) 1. 등록동아리 활동의 주된 목적은 정규 교과 과정의 틀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학술, 문화, 예술 등의 탐구 활동을 통해 가톨릭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실현함에 있어 폭 넓은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2. 등록동아리의 정체성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에 따라 학술 동아리와 활동 동아리로 분류된다.

제40조 (등록동아리 설립과 폐부) 1. 등록동아리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총 5명의 회원과 지도 신부 1명을 갖추며, 39조에 의거한 동아리 성격에 부합되어야하며, 소정의 신청 양식을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제출해야한다.

2. 39조 2항에 따른 등록동아리의 목적을 확립하는 것은 개별 동아리의 권한이다.

3. 등록동아리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제출 하고, 교학부처장에 보고한다. 교학부처장 보고 후 동아리는 폐부된다.

제41조 (등록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등록동아리는 동아리의 목적과 지향에 상응하는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등록동아리는 1년에 한번 학교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등록동아리 대표는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등록동아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등록동아리는 매 학기 시작할 때 동아리 활동 계획을 소정 양식에 맞추어 등록동아리 지원 기획부에 제출해야한다.

## 제 8 장 선 거

제42조(선거원칙) 본 회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이다.

제43조(선거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권(選舉權)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부생에게 주어진다.

제44조(피선거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피선거권은 본 대학 3학년 재학생에게 주어진다.

제45조(입후보 및 선출방법)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선거권(被選舉權)을 가진 자 중에서 회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동반(同伴) 입후보한다.

2. 회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만 유효하다.

3. 후보자가 2조일 경우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4. 후보자가 3조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過半數)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5. 단독 후보일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6.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6조(선거 시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2학기 중강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집행

부의 논의를 거쳐 다른 시기에 옮겨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職務)를 수행(修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여(殘餘)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이면 그 사유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補闕選舉)를 실시한다. 단,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일 경우 제16조 2항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계승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1. (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년 신학생 1명과 통학생 1명으로 구성(構成)되며, 구성된 선거관리(選舉管理)위원 중 최고(最高)학년 1인을 선거관리(選舉管理)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소집 및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 전에 학생회장이 소집하며 선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한다.

## 제 9 장 회칙개정

제50조(발의) 학생회장 또는 과반수(過半數) 이상의 집행부 구성원 또는 회원 1/5 이상의 동의로 회칙 개정을 발의한다.

제51조(의결 및 공포) 본 회의 회칙 개정의 의결 및 공포는 다음과 같다.

1. 회칙(會則) 개정(改定)이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은 집행부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을 마련하여 학생총회 개최 전 5일 이내에 공고(公告)하고 개정 내용에 관하여 1회 이상의 공청회를 거쳐 심의, 의결한다.
2.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公布)해야 한다.

## 제 10 장 탄핵소추권

제52조(발의) 집행부 1/4 또는 본 회 회원 1/5의 동의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이 경우에 피탄핵자의 성명과 직위, 탄핵의 사유, 증거, 탄핵소추 발의자들의 서명을 담은 명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결) 의결은 학생총회 의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4조(공포) 학생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교수가 탄핵 의결을 즉시 공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Ⅰ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칙 제49조에 따른다.

제2조(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선거 종료 후 자동적(自動的)으로 해산한다.

제3조(선거관리 위원의 입후보 등록) 선거관리 위원은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개의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過半數)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거일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제6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立候補者)에 대한 자격을 심사(審査)하고 선거일 5일전까지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투·개표 관리)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관리하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이 관리한다.

제8조(투·개표 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각 투표, 개표장에 참관인 1인씩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9조(무효소송) 1.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異意)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전(前) 항의 제소(提訴)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0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개표를 완료하고 바로 당선 공고를 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세칙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교학부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수혜대상) 본교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3.1., 2014.3.1]

1. 학부 재학생
2. 대학원 및 연구과 재학생
3.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자격제한) [삭제 2012. 3. 1]

제6조(교내장학금의 종류와 금액) ① 교내 각종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입학장학금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일반전형과 성신평형 각각 상위 1명씩에게 지급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A급(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각 학년별 상위 3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단, 대학수료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학년에 이수해야 할 학점 %에 미달할 경우,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9. 1]
3. 하상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급(80점) 이상인 일반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9. 1]
4. 가족장학금은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그 중에서 저학년 학생에게 지급한다. 저학년의 기준은 학년, 생년월일 순으로 정하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해당학년에 이수해야 할 학점의 2/3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B급(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5. 대견장학금은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대학원1~3학년)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3.1., 2014.3.1]
6. 양업장학금은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학부1~4학년)에게 지급한다.[신설 2012.3.1, 개정 2014.3.1.]
7. 근로장학금은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8. 외국어장학금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별표1-1] 참조).
9. 선교장학금은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교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교가 초청한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에게 지급한다.
10. 루도비코장학금은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신입생에게 지급한다.
11. 해외연수장학금은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등 본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12. 신학원장학금은 교구 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14.3.1.]

-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5]
- 제7조(교내 장학생의 선발) ① 교내 각종 장학생은 매학기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 ② 교내 장학생의 선발 시에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충족할 목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교외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교외 장학생은 국가기관, 교외인사나 외부장학재단에서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외 장학생의 선발이 본교에 위임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2.3.1.]
- ②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장학금의 취소) 장학금의 수혜자가 자퇴 및 제적 처리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수혜) ① 장학금의 중복수혜는 허용된다. 단, 성적우수와 하상, 성적우수와 가족, 가족과 하상 장학금 간의 중복수혜는 불허한다.
- ② 국가장학금 및 공공기관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개정 2012.3.1, 2014.3.1]
- 제1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1]
- 제12조(대학원 장학금) ① 본교 출신자로서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성직자 및 수도자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 ② 본교의 재학생(신학생 및 수도자)은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교무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박사과정에 등록할 서울교구 출신 새사제에 한하여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대학원 교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신학부총장이 허락한 자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 제13조(유학지원장학금) ① 본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유학생 선발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액은 유학준비비와 유학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학지역, 유학기간,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3. 18]
- 제14조(입학금의 감면) 학부 신입생 중 수도자와 평신도 학생에게는 입학금의 50%를 감면한다.

##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2년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 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개정 규정([별표 1])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개정 규정(제6조, 제10조, [별표 1])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 1])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본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본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10조,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본 개정 규정([별표 1])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⑮ 본 개정 규정(제14조)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⑯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1], [별표1-1])은 201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명칭	수혜대상	지급액
우수입학	일반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2/3 (입학금 제외)
	성신평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1/3 (입학금 제외)
성적우수	학년별 성적 1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2/3
	학년별 성적 2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1/2
	학년별 성적 3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1/3
하상	일반학생 신청자 중에서 선발된 자	〈학 부〉 A급(90점) 80만원 B급(80점) 60만원 〈대학원〉 A급(90점)100만원 B급(80점) 80만원
가족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등록금의 1/2 (입학금 제외)
대건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대건A: 대학원1, 대건B: 대학원2~3)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양업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학부1~4)	등록금의 20% (입학금 제외)
신학원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	신학원비의 80%
근로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근로시간에 따름
외국어	별표 1-1 참조	20~100만원
선교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루도비교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신입생	1년간 학기당 200만원
해외연수	여학연수	100만원
	해외문화탐방	팀당 300~400만원

[별표 1-1]

금액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OEFL (IBT)	TOEFL (CBT)	TestDaF	DELF	CELI	CILS	DELE	JLPT	HSK
100만원	900이상	100이상	250이상	TDN 4	DELF B2	3	Due	B2	N2	4급
50만원	800이상	88이상	230이상	TDN 3	DELF B1	2	Uno	B1	N3	3급
20만원	750이상	80이상	213이상	ZD	DELF A2	1	A2	A2	N4	2급

[별표 2] 교외 장학금의 종류

- 학장특별장학금
- 김대건성인장학금
- 외국인신학생양성장학금
- 꾸르실료장학금
- 바오로사도선교장학금
- 국가장학금
- 보훈장학금

# 성심교정

## 1. 총학생회 회칙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호, 2019.10.21. 전부개정,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전 문 >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진리, 사랑, 봉사」 정신에 따른 학원의 자주화와 인류 사회 발전 및 보편적 평화에 기여하는 회(會)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학생사회의 미증유적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하여 독립적 학생사회 건설과 회원의 폭넓은 권리 보장을 추구하고, 자유와 정의, 교육권을 수호하며 가톨릭대 공동체의 자주적인 실현과 민주적·능동적 뜻을 온전히 정립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부 개정한다.

### < 제1장 총칙 >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 총칙 1호, 2019.10.21. 개정, 전부개정]

제1조 【명칭】 명칭은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주의 가치에 따른 독립적 학생사회 건설과 회원의 폭넓은 권리 보장을 추구하고, 자유와 정의, 교육권을 수호하며 가톨릭대 공동체의 자주적인 실현과 민주적·능동적 뜻을 온전히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운영】 본회는 회원의 민주적으로 자주적인 참여 아래, 본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5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부 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② 단, 매 정규 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학생회를 통한 회비 납부 및 회원신고를 마친 휴학생 또한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 조 2항의 시행을 위하여, 매 정규 학기 개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비 납부 및 회원 신고방법과 기한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교환·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6조에 열거된 권리 중 제6항과 제7항, 제7조에 열거된 의무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인종, 사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소속 등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회원은 본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지닌다.
- ⑤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에 따라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⑥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⑦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⑧ 회원은 본 회의 운영계획 및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회원은 본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의무가 있다.
- ③ 회원과 본 회의 각 기구는 제6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감사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3. 특별기구 :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사생회, 도서관자치위원회, 유학생위원회, 인수인계위원회
4. 산하기구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부·과 전공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5. 감사기구 : 예·결산특별위원회

제9조 【자치회칙제정권】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자치 기구와 본 회의 회칙에 따라 인정받은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본 회에 소속된 모든 자치기구의 각종 회칙 및 규칙, 시행세칙이 본 회의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자치기구의 회칙 등에 대하여 제한 내지 허용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겸직 금지】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단, 궐위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 각 학부·과 전공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4. 각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분과장
5.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

②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무처리】 ① 본 회 각 기구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 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④ 그 밖에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록물 관리】 ① 본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합부로 훼손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본 회가 생산·수집하는 본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 ⑤ 본 회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들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회원들은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혹은 일부 공개하거나 공개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1. 학교와의 협의 및 대응에 관한 자료로 공개 시 정보가 사전 누출되어 협의 및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징계 및 해임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신상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선거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4.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거나 공개 시점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된 내용
- ⑥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해당 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있다.

제13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 회의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 회의는 본 회가 참여하도록 된 학교 기구 또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4.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④ 본 회의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칙 개정을 건의할 수 있고 학사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제2장 의결기구〉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1호. 2019.10.21. 기구신설. 전부개정]

### 제1절 통칙

[시행 2019.10.21.]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4조 【목적】 본 회의 의결기구는 본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임기구이다.

제15조 【의결기구의 위계】 ① 본 회의 의결기구는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권한이 있다. 단, 전체학생총투표의 의결효력은 전체학생총회와 동일하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상이할시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 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제16조 【의장】 ① 본 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본 회의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본 회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대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각 의결기구의 대의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특정 개인·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 제18조 **【긴급한 사항】** ① “긴급한 사항”이란 회의 소집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할 사항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긴급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집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2. 공고 기간 절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 제19조 **【연서의 심의】** ① 전체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한 소집요구 및 안전 발의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위 의결기구가 지체 없이 본 회의를 소집하여 연서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안전발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개의 직후 연서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③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집 및 시행 요구가 연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연서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④ 각 의결기구의 대의원들은 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 제20조 **【안전 발의】** 안전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 요건에 따른다.
- 제21조 **【안전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각 기구에 부수된 특별한 의결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을 의결한다.  
 ② 안전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전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대의원 모두 평등하게 가지며, 총투표의 투표수를 제외하고는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제22조 **【표결방법】** ① 안전 표결의 방식은 전체학생총투표를 제외하고는 공개 거수표결로 한다.  
 ② 중요하거나 민감한 안전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외하여 의결기구의 대의원 혹은 위원이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제23조 **【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절 전체학생총회

[시행 2019.10.21.] [제2장 의결기구 제2절 전체학생총회 1호 2019.10.21. 제목수정. 전부개정]

- 제24조 **【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제25조 **【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6조 **【의장】** 전체학생총회 의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또는 부재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 제27조 **【업무 및 권한】** 전체학생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28조 【소집】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중 각 호에 의해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단의 요구 <개정 : 19. 09. >
2. 중앙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요구
3. 확대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요구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과반수의 요구
5. 본 회 회원의 1/10이상의 요구

제29조 【소집 공고】 ①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공고는 개최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총회 시작 일시
2. 총회 장소
3.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30조 【개회】 전체학생총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학기에 등록된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1조 【안전】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1.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전
2.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
4. 본 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

제32조 【의결】 전체학생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절 전체학생총투표

[시행 2019.10.21.] [제2장 의결기구 제3절 전체학생총투표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33조 【지위】 전체학생총투표는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이는 전체학생총회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34조 【권한】 ① 본 회의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회의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토론·의결한다.

제35조 【투표권】 전체학생총투표가 실시되는 학기에 등록된 회원은 전체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36조 【시행】 전체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시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의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요구
3. 확대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요구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과반수의 요구
5. 본 회 회원의 1/10이상의 요구

제37조 【시행 공고】 ① 전체학생총투표 실시와 투표 안전은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총투표 실시와 투표 안전을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체학생총투표의 시행 일시
2. 전체학생총투표의 투표소 설치 장소

### 3. 전체학생총투표의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38조 【성립】 전체학생총투표는 안전의 내용과 관계없이 투표권자의 1/10 이상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39조 【총투표관리위원회】 ① 전체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투표관리위원장은 전체학생총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닌다.

③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전체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는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총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총선거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투표 기간】 ① 전체학생총투표의 투표 기간인 3일의 범위에서 총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총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일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결과 공고】 전체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 때 최종 투표율은 선거인 명부가 아닌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2조 【의결】 전체학생총투표는 안전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 회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준용】 그 밖에 전체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총선거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2019.10.21.] [제2장 의결기구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호 2019.10.21. 전부개정]

제44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45조 【구성 및 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3. 각 학부·과 학생회장
4. 각 학부 소속된 전공의 전공대표자
5. 각 학부·과 전공 소속의 학년대표자
6.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7.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장
8. 도서관자치위원장
9. 졸업준비위원장
10. 사생회장

②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이 학제 개편 등으로 신설·폐지·개편 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해당 기구를 대표하는 대의원 의석의 신설·폐지를 의결한다.

③ 결위, 사고,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공석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외한다.

④ 매 전학대회의 10일 전 총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및 학부·과 전공의 학생회장, 대표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에게 공고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학생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한다.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제47조 【대의원의 결석】 ① 대의원이 사고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학부·과 전공의 대의원의 경우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을 거쳐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고 그 외의 대의원의 경우에는 의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② 결석계의 제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일 1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결석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대자보 등을 통하여 「사무처리세칙」에 정한 서식대로 결석 사실을 공개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계의 사유를 참작하여 심의한다.

제48조 【대의원의 권한위임】 ①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이 없는 경우 타 학우가 대의원 자격을 대신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은 대의원과 동등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임의 경우 위임을 한 자는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자 대신 다시 참석하더라도 권한이 없고 위임자에게 전권이 위임된다.

제49조 【위임장의 형식 및 성립】 ① 위임장의 형식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대의원의 소속, 직책, 이름, 학번, 위임사유

2. 위임대상자의 소속, 이름, 학번

② 위임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50조 【의장】 ① 총학생회장은 의장으로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 총학생회장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의장 자격을 대행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탄핵 소추 및 궐위, 유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제51조 【업무 및 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리

2. 총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리

3.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의결권

4. 총학생회비의 인상, 인하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5.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특별기구 등 총학생회비를 배분 받는 자치기구의 예·결산 심의 및 의결권

6. 졸업준비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서관자치위원장에 대한 인준 및 파면권

7.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의 설치·해산·합병에 대한 심의 및 인준

8.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의 부적절한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요구권

9. 전체학생총회 소집발의 및 전체학생총투표 실시에 대한 결정권

10. 예·결산특별위원회의의 소집요청을 통하여 자치기구를 감사할 수 있는 권리

11. 회원, 집행기구, 특별기구, 산하기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본 회칙·세칙을 위배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리

12.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의결권

1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권

14. 학교본부와의 협의체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리
15. 기타 안전으로 채택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제52조 【소집】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① 정기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직후 50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1/2 이상의 요구
  2. 확대운영위원회 1/3 이상의 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의 1/3 이상의 요구
  4.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

제53조 【소집공고】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총회 소집과 상정안건을 개최일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대의원 명단
  4.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54조 【개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5조 【안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요건에 의하여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이 상정한 안전 <개정 : 19. 09. >
2.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1/3이상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연서를 통한 안전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를 통한 안전 <개정 : 19. 09. >
4.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안전

제56조 【재소집 및 안전위임】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개회가 되었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단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에 관한 사항, 의결의 건
2. 총학생회비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3. 회원, 집행기구, 특별기구, 산하기구, 전체학생대표자 대의원 본 회칙·세칙을 위배했을 때 징계 의결의 건

제57조 【징계】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원, 집행기구, 특별기구, 산하기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본 회칙·세칙을 위배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2호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2. 제명 : 학생자치활동, 총동아리 활동 제한

- ③ 집행기구 및 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해임 의결
- ④ 특별기구 및 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 2. 다음 회기의 예산안 삭감
  - 3. 기구장에 대한 사퇴권고
-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3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요구
  - 2.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 3. 대의원 자격 정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 4. 대의원 제명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위원 자격도 제명된다)
- ⑥ 예·결산특별위원회의의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발의하여 해당 자치기구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3호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 공개경고와 사과문 게재
  - 2. 횡령금액에 대한 환급 명령
  - 3. 해당 단체의 자원 임시적 동결
  - 4. 형사처벌 검토 및 고발
- ⑦ 자격 정지와 제명에 대한 징계는 그 기간을 1학기, 1년, 영구의 기간 중에서 정한다.
- ⑧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 제5절 확대운영위원회

[시행 2019.10.21.] [제2장 의결기구 제5절 확대운영위원회 1호. 2019.10.21. 전부개정]

제58조 【지위】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가 되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

②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가진다.

제59조 【구성 및 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1. 총학생회장단
-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 3. 각 학부·과 전공 학생회장
- 4. 총동아리연합회장단
- 5. 졸업준비위원장

6. 도서관자치위원장

7. 사생회장

② 결위, 사고, 선거 미 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공석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제60조 【의장】 확대운영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결위나 유고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한 명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확대운영위원회의 개의 이후 재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업무 및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지위를 위임받아 심의, 의결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은 위임 받을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에 관한 사항
2. 총학생회비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3. 총학생회장단 탄핵발의에 대한 의결의 건
4. 회원, 집행기구, 특별기구, 산하기구, 전체학생대표자 대의원 본 회칙·세칙을 위배했을 때 징계 의결의 건
- ③ 방학 중이거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본 회의 긴급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④ 총학생회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소집】 확대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이가 무산되었거나, 개이되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2. 본 회의와 관련한 긴급사항을 신속하게 의결해야 할 경우
3.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연서
4. 확대운영위원회의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5. 총학생회장의 요구

제63조 【소집 공고】 ①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확대운영위원회 소집과 상정안건을 개의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전과 안전에 대한 설명

제64조 【개의】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5조 【안전】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이가 무산되었거나 개의 되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임된 안전
2.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
3.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전
4. 총학생회장의 요구로 상정된 안전

제66조 【의결】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은 재적 대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리

2. 총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리
3.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부적절한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요구권
- ③ 의결의 방식은 공개투표로 한다.

## 제6절 중앙운영위원회

[시행 2019.10.21.] [제2장 의결기구 제6절 중앙운영위원회 1호, 2019.10.21. 전부개정]

제67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업무 운영의 민주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로서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68조 **【구성 및 중앙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3. 총동아리연합회장
- ②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특별기구의 장은 참석하여야 한다.
- ③ 권한 대행자를 제외한 대리인은 둘 수 없으며, 결위,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에서 제한한다.
- ④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치기구에서는 발언권만 가지는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제69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제70조 **【중앙운영위원의 결석】**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사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할 때 외에는 3회 이상 결석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속 기구에 결석 사실을 고하고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71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본 위원회를 통하여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제72조 **【회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와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3조 **【개의 및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4조 **【안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



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4. 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제75조 **【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총학생회비를 책정·편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②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검토·조정한다.
- ③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심의·조정한다.
- ④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⑤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⑦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 방향과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 ⑨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학교 행정에 관한 심의 및 개정 요구권을 가진다.
- ⑩ 확대운영위원회 소집권을 가진다.
- ⑪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권을 가진다.
- ⑫ 본 회 특별기구의 제반 사업을 검토·심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⑬ 학교 당국과의 협의체에 학생대표로서 참여한다.
- ⑭ 기타 위임된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다.

제76조 **【특별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안건을 효율적으로 진행·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 구성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내에서 호선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특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을 중앙운영위원회를 보고해야 한다.
- ⑥ 특별위원회의 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을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 상정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위원 명단 및 활동내역·예산·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집행기구〉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 의결기구 1호 2019.10.21. 기구신설. 전면신설]

#### 제1절 통칙

[시행 2019.10.21.]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77조 **【정의】** 본 회의 집행기구는 본 회의 사무와 업무 집행을 위한 상임기구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78조 **【구성】**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1. 총학생회장단

2.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3.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제2절 총학생회장단

[시행 2019.10.21.] [제3장 집행기구 제2절 총학생회장단 1호 2019.10.21. 전부개정]

제79조 【지위】 총학생회장단의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80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 회칙 및 총학생회 회칙개정안 공포권을 가진다.
- ④ 총학생회의 전체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편성된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회부하고 승인된 모든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다.
- ⑥ 본 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⑨ 총학생회장단은 본 회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자로서 참석한다.

제81조 【의무】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 회의 대표로서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본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본 회와 본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선서】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칙의 준수를 서약하는 다음의 선서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한다. “본인은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회원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3조 【임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 【결위 및 유고】 ① 사망, 탄핵, 사임 또는 피선거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결위’라 한다.

- ②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를 ‘결위’라 한다.
- ③ 특별한 사유에 의해 30일 이상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의결을 내렸을 경우 ‘유고’라 한다.
- ④ 탄핵안 발의 시부터 탄핵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유고’라 한다.

제85조 【사업】 총학생회장단이 사업을 할 경우 다음을 따른다.

- ①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 수행한다.

제86조 【신분보장】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사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신분이 보장된다.

제87조 【권한 대행】 총학생회가 무산, 궐위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중앙운영위원 1인을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며, 선임 중앙운영위원은 총학생회장의 권한에 견준다. 단, 임기는 총학생회장단 혹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 제3절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시행 2019.10.21.] [제3장 집행기구 제3절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1호. 2019.10.21. 전부개정]

제88조 【지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89조 【구성】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의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중 1인으로 선임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후 인준을 받는다.
- ③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90조 【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개정 : 19. 09. >
- ② 총학생회 사업계획 보고서와 예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예·결산안 보고서를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기타 본 회의 모든 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한다.

제91조 【해임 또는 파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른다.

### 제4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시행 2019.10.21.] [제3장 집행기구 제4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92조 【지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기간동안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93조 【권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장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제94조 【구성】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1.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될 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될 때

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과 비상대책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

제95조 【임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재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당선자 공고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6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총선거, 재선거 이후 제84조 【궐위 및 유고】에 해당될 때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선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해당사항의 공고는 재선거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진행한다.

1.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④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정규 2학기 종강일까지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 간선 투표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설립위원들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산한다.

1.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과정(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결과(선출자 정보)
3.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7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출석, 출석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인준 받아야 한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되면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회는 소속 단위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듬해 1월 1일 이후 파견해야 한다.

제98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 〈제4장 특별기구〉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장 특별기구 1호 2019.10.21. 기구신설. 전면신설]

### 제1절 통칙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1절 통칙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99조 【정의】 본 회의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본 회의에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00조 【구분】 특별기구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 나누어 구분한다.

제101조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①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 받는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구들은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이다.

1. 졸업준비위원회
2. 교지편집위원회
3. 사생회
4. 도서관자치위원회

제102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 ①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며, 최종 관리 감독의 권한은 총학생회장단에게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구들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이다.

1. 유학생위원회
2. 인수인계위원회

제103조 【임기】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의 위원들의 임기는 자치회칙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준한다.

제104조 【성립 요건】 ①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
2. 본 회의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

제105조 【설치】 특별기구 인준에 대한 심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인준하여 설치한다.

제106조 【협외】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의 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구는 필요한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107조 【재정】 ① 특별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기구는 특별기구의 운영을 위해 본 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특별회비를 납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졸업준비위원회, 사생회, 교지편집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③ 특별회비를 걷지 않는 특별기구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④ 총학생회비 내에서 재정을 배분받는 특별기구의 경우 예산안 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해

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정을 배분받은 특별기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비 배분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 삭감을 수반하지 않는 경고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때. (단, 사생회는 예외로 한다.)
2.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날 때
3. 기구의 성격, 활동이 성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제109조 【해산·합병】 ① 본 회 차원에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0조 【자치회칙】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칙을 둘 수 있으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기구의 자치회칙을 따른다.

## 제2절 졸업준비위원회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2절 졸업준비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11조 【지위】 졸업준비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 회의 특별기구이다.

제112조 【구성】 ① 졸업준비위원회는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구성·운영된다.

②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총무로 구성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회칙에 따른 졸업준비위원회 산하에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113조 【위원장】 ① 졸업준비위원장은 졸업준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졸업준비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인원 중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거친 한 명을 선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여 임명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 받은 졸업준비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졸업준비위원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준한다.

⑤ 졸업준비위원장의 파면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파면한다.

⑥ 졸업준비위원장은 졸업준비위원회의 자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졸업준비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14조 【업무 및 권한】 ①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 사업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졸업준비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졸업준비위원장은 예산안 책정, 졸업준비위원회 운영·사업 계획 수립, 사업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때 졸업준비위원회 운영·사업 계획은 졸업사진촬영 업체 선정, 졸업사진앨범업체 선정, 졸업 기념품 선정, 졸업준비위원회 자체 행사 진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졸업준비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감사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제115조 **【재정】** ① 재정은 졸업준비금과 교비지원금 및 기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자치회칙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졸업준비위원회의 졸업준비금, 교비지원금 및 기타보조금 결산에 대해서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졸업준비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매 년 운영·사업 계획과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3절 교지편집위원회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3절 교지편집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16조 **【명칭】** 교지편집위원회 명칭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편집위원회’로 한다.

제117조 **【목적】**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성심교정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는 교지의 제작·편집·발간(이하 ‘발행’이라 한다) 및 기타 사업의 실행을 통하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 대학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8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학기 1회 이상 교지 발간
2.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119조 **【지위 및 위상】** ① 본 위원회는 독립적인 학생자치 언론기구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편집권을 가진다.

②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부당한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③ 본 위원회는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언론으로 구성원 인준, 기구 해산, 사업내용, 징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총학생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감사기구에서 논의할 수 없다.

제120조 **【편집위원총회】** 편집위원총회는 본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제반 안전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제121조 **【구성】** 편집위원총회는 편집장, 부편집장, 편집위원, 수습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2조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안은 편집위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1. 편집장의 선출, 징계 및 해임
2. 기획안의 심의 및 의결
3.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결산의 심의 및 의결
5. 회칙 개정
6. 편집위원의 임명 및 해임
7. 편집위원 징계사항 의결
8. 수습위원의 선발
9. 기타 주요한 사항의 의결

② 본 위원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회칙에 따른다.

제123조 **【회의】** 편집위원총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기타 의결할 사안이 있을 시 편집장 또는 편집위원의 발의로 편집장이 소집한다.

제124조 **【편집장】** 편집장은 다음 각 항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본 회의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본 회의의 의견을 대리한다.

- ② 편집위원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성심>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다.
- ④ 기타 본 회의 장으로서의 필요한 업무에 대한 자율적 수행권을 가진다.

제125조 【편집장의 자격】 편집장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재학 중인 자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으로서 <성심>지 발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에 한한다.

제126조 【편집장의 임기】 편집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제127조 【재정】 교지편집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① 위원회의 예산은 재학생이 납입하는 교지발행비로 책정한다.
- ② 위원회의 재정치출은 교지편집업무와 학내 언론활동에 한하며, 편집위원총회의 승인에 의해 지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한다.
- ④ 위원회의 결산은 년 1회 이상 발행되는 교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4절 사생회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4절 사생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28조 【지위】 기숙사 사생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기숙사 사생들을 회원으로 하는 특별기구이다.

제129조 【구성】 ① 사생회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운영된다.

- ② 사생회는 남자 사생장·여자 사생장·총장으로 구성한다.

제130조 【사생장단】 ① 사생장단은 자치 회칙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생들이 선출한다.

- ② 사생장의 임기와 자격은 당해 연도 2학기 종강 다음날부터 이듬해 정규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제131조 【업무 및 권한】 ① 사생회는 사생들의 복지 개선과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사생회는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2조 【재정】 ① 사생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마련한다.

1. 기숙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기숙사비와 함께 고지하는 사생회비를 납부를 통한 자체 마련
  2. 교비지원금
- ② 사생회의 재정은 자치회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절 도서관자치위원회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5절 도서관자치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33조 【목적】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도서관 내 제반 학생시설의 관리, 조사, 개선을 도모하며 도서관 이용자 질서 확립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도서관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건전한 도서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34조 【업무】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내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접수
2. 도서관 내의 제반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 3. 도서관 내의 기본질서 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
- 4. 기타 이용자 및 도서관 간의 협조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제135조 【구성】 ① 도서관자치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인원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여 임명한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도서관자치위원장은 도서관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6조 【위원장의 권한】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137조 【의무와 권리】 ① 도서관자치위원회는 각자 맡은 임무에 관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도서관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상식 내에서의 제재권을 가진다.

제138조 【책임】 도서관자치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 내부 협의 혹은 도서관자치장의 결정으로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139조 【재정】 ① 도서관자치위원회 재정은 총학생회비 분배액 및 기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운용한다.

- ②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총학생회비 분배액 및 기타보조금 사용에 관한 예산안 결산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③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학기 별 운영·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6절 유학생위원회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6절 유학생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40조 【지위】 유학생위원회는 본 회의 유학생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인 회원과 유학생 회원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본 회의 특별기구이다.

제141조 【구성】 ① 유학생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운영된다.

- ② 유학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학생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유학생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본 회의 회원 중 외국인 학부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국인 회원도 허용할 수 있다.
- ④ 유학생위원회의 구성은 과반이 인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인 학생을 집행부로 둘 수 있다.

제142조 【위원장단】 ① 유학생위원장은 유학생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1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 유학생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여 정식 유학생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③ 유학생부위원장은 유학생위원장이 임명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유학생위원장과 함께 인준하며, 유학생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 ④ 유학생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준한다.
- ⑤ 유학생위원장, 부위원장의 파면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파면한다.

제143조 【재정】 유학생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산을 보고하고 심의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 【업무 및 권한】 ① 유학생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내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인식 제고, 한국인 회원과 유학생 회원의 소통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유학생위원회는 학기 별 사업계획서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절 인수인계위원회

[시행 2019.10.21.] [제4장 특별기구 제7절 인수인계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45조 【지위】 인수인계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특별기구이다.

제146조 【구성】 ① 인수인계위원회는 당해 연도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7인 이상의 인계위원과 차기 연도 총학생회장단 및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특별기구 전원의 인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7조 【임기】 인수인계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연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시작하여 차기 학생회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단, 차기 연도 총학생회장단의 요청과 인수인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제148조 【위원장】 ① 인수인계위원장은 당해 연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한다.

② 인수인계위원장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차기 연도 총학생회장 당선인에게 성실하게 인계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제149조 【업무 및 권한】 ① 인계위원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작성하여 인수위원에게 인계한다.

1. 당해 연도 총학생회의 주요 정책·공약 및 사업과 그 성과
2. 당해 연도 등록금심의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 안건과 논의사항
3. 총학생회의 중장기 정책의 진행 상황
4. 당해 연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주요담당업무
5. 예결산 현황
6. 기타

② 인수위원은 인계위원으로부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인계 받아 총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시작한다.

③ 인수위원은 인계위원에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제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0조 【해산】 인수인계위원회는 임기 종료 후 바로 해산한다.

## 〈제5장 산하기구〉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장 산하기구 1호. 2019.10.21. 기구신설. 전부개정]

### 제1절 단과대학 학생회

[시행 2019.10.21.] [제5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 학생회 1호. 2019.10.21. 전부개정]

제151조 【지위】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부과정의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 본 회원의 지위를 갖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52조 【구성】 단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은 소속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153조 【업무 및 권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각 학과대학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54조 【의결기관】 ① 단과대학 학생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소속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단과대학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③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칙이 없는 단과대학의 경우, 회칙 개정 전까지 「총학생회칙」을 최대한 준수한다.

제155조 【단과대학 학생회장】①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의 자치회칙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 재학생 전체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의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임기와 자격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같은 단과대학(학생) 대표자회의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

⑤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단에게 각 과 실험실습비 내역 등을 포함하여, 각 단과대학 등의 교육환경과 관련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⑥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56조 【집행기구】 ①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본 회의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57조 【재정】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58조 【변경에 관한 특례】 학제개편으로 현황과 다른 단과대학이 생성, 변경, 폐지 된 경우에는 회칙 개정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회칙 개정에 임해야 한다.

제159조 【자치회칙】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자치회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단과대학 자치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 제2절 학부·과·전공 학생회

[시행 2019.10.21.] [제5장 산하기구 제2절 학부·과·전공 학생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60조 【지위】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부·과·전공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 본 회원의 지위를 갖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61조 【구성】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회원은 소속 학부·과·전공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162조 【업무 및 권한】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학부·과·전공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63조 【의결기구】 ① 학부·과·전공 학생총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학부·과·전공 운영위원회는 학부·과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③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학부·과 학생회장】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학부·과·전공의 자치회칙에 따라 해당 학부·과·전공 재학생 전체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의 대의원, 해당 소속 학부·과·전공 학생회가 속한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③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의 임기와 자격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단에게 각 과 실험실습비 내역 등을 포함하여, 각 단과대학 등의 교육환경과 관련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⑤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65조 【학부·과·전공 학년대표】 ① 학부·과·전공 학년대표는 학부·과 자치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부·과·전공 학년대표는 해당 학부·과·전공 학년들을 대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해당 소속 학부·과·전공 학생회가 속한 단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해당 학부·과·전공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166조 【집행기관】 ①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총회에 본 회의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67조 【재정】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해당 학생회원의 회비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보조금을 둘 수 있다.

제168조 【자치회칙】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자치회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학부·과·전공 자치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총학생회칙」 혹은 「단과대학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 제3절 총동아리연합회

[시행 2019.10.21.] [제5장 산하기구 제3절 총동아리연합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69조 [지위] 총동아리연합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정식 및 가등록 된 모든 총동아리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연합체이다.

제170조 [구성]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총동아리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중앙총동아리로 구성된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서는 총동아리연합회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총동아리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총동아리연합회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71조 [업무 및 권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정식 및 가등록 된 모든 총동아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동아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총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172조 [의결기관] ① 전체총동아리대표자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전체총동아리대표자회의 다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③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제173조 [총동아리연합회회장단] ① 총동아리연합회회장단은 총동아리연합회의 자치회칙에 따라 해당 총동아리연합회 회원 전체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회장은 총동아리를 대표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의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74조 [집행기관] ①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총동아리 연합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총동아리연합회의 자치회칙으로 정한다.

제175조 [재정] 총동아리연합회회장은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제6장 감사기구〉

[시행 2020.01.0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6장 감사기구 1호. 2019.10.21. 기구신설. 전면신설]

### 제1절 감사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시행 2020.01.01.] [제6장 감사기구 제1절 감사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1호. 2019.10.21. 전면신설]

제176조 [지위]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에 의해 설치 되는 본 회의 최고 상설 감사기구이며 학생회비를 재정으로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집행 및 결산의 감사를 관장한다.

제177조 [구성]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1.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에서 파견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두 명
  3. 총동아리연합회에서 파견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한 명
  4.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선출한 2인 (이 경우 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로 한다.)
- ② 예·결산특별위원이 없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을 파견하여야 한다. 단, 발언권 이외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178조 【위원장】 위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제179조 【예산】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은 의결기구 예산 배분 시에 배분 받는다.

제180조 【업무 및 권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과 같이 정한다.

-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한 예산안·결산을 사전 심의 및 감사한다.
  1.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이하 각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및 특별기구 등 총학생회비를 재정으로 하는 모든 자치기구에 대한 예산안·결산의 사전 심의 및 감사
  2. 학부·학과 전공 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기숙사 사생회·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결산의 심의 및 감사
-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기구에 대하여 매 학기 1회의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 ③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전 심의 및 감사 내용을 보고하며, 감사보고서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자료집에 공개한다.
- ④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⑤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자치기구의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본 조에 따른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재원을 임시로 관리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81조 【감사사항】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수입, 지출 등 결산에 대한 기록
2.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한 증빙서류 구비 여부
3. 잘못된 구매행위나 자원의 남용 및 낭비
4. 자치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지출이외에 사적인 지출
5. 그 밖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2조 【감사기간】 1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자를 상반기로 정하고, 1학기 종강일의 다음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로 정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다음의 항을 따른다.

- ① 전년도 하반기 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안은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제출한다.
- ② 상반기 결산안은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제출한다.

제183조 【수시감사】 수시감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을 따른다.

- ① 정기 감사 외에도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수시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의 자치기구들에 대한 수시감사의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집행기구 및 특별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2. 산하기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각 산하기구 회원 1/3 이상의 연서

제184조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감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 대의원 1/2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

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5조 【사전공고】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정기 감사 시행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 감사대상
2. 결산서 등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3. 감사일정표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공고 이전에 감사 대상과의 논의를 거쳐 결산서 등의 형식을 배포해야한다.

제186조 【결산안 공개】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감사 진행 후 각 단위의 결산안을 전체 학우들에게 공표한다.

② 최소 3일 이상 공표하며, 각 게시판의 규격은 A0로 최소 3매로 한다.

제187조 【기타사항】 필요 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 회 회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제188조 【시행세칙】 기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장 재정〉

[시행 2020.01.0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장 재정 1호 2019.10.21. 개정. 전부개정]

### 제1절 통칙

[시행 2020.01.01.] [제7장 재정 제1절 통칙 1호 2019.10.21. 신설. 전면신설]

제189조 【원칙】 본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90조 【기본이념】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2절 자원·분배

[시행 2020.01.01.] [제1장 재정 제2절 자원·분배. 2019.10.21. 신설. 전면신설]

제191조 【자산】 ① 본 회의 재정은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와 각종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취득 과정에서 본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2.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본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③ 본 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산에 관련해 본 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2조 【자산의 관리】 ① 집행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구 자산은 본 회의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집행기구는 재원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본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93조 【총학생회비·배분】 ① 총학생회비는 매년 당해 1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달리 정학, 휴학 등 특정한 사유로 매년 당해 1학기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2학기에 등록을 하는 경우 총학생회비를 2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비는 본 회의 운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총학생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제3절 회계·심의·감사

[시행 2020.01.01.] [제7장 재정 제3절 회계·심의·감사 1호. 2019.10.21. 신설. 전부개정]

제194조 【회계 연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1월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를 상반기로 정하고, 1학기 종강일 다음날로부터 12월31일 까지를 하반기로 정한다.

제195조 【심의의 원칙】 ① 본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 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결산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③ 이 밖에 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196조 【심의】 ① 본 회의 총학생회비를 배분받는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심의에 관한 일정을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③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내용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문서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④ 이 밖에 심의의 내용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197조 【재심의】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결산 사전 심의가 부결될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재심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재심의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 혹은 재심의에서도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기구에 대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57조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 제4절 예산·결산

[시행 2020.01.01.] [제7장 재정 제4절 예산·결산 1호. 2019.00.00 신설. 전부개정]

제198조 【예산】 ① 본 회의 총학생회비를 배분받는 기구는 매년 당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도록 한다. 단, 예산안이 심의 및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

② 이 밖에 예산의 내용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199조 【가예산】 ①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이전에 예산의 집행이 요구 되는 경우, 전 년도 예산의 10%내에서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해당 가예산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하며, 집행사유를 명확히 하고 예산안 편성 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 【경정예산】 예산이 심의 및 의결된 이후 세입 및 세출의 변경 등으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1조 【결산】 ① 본 회의 총학생회비를 배분받는 기구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결산의 경우 총학생회비를 배분받는 기구 이외에 학부·과·전공 학생회 및 특별기구의 결산 또한 심의의 대상이 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④ 이 밖에 결산의 내용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202조 【감사】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산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에 관해서 감사를 행 할 수 있다.

② 이 밖에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학생회칙」 제10장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203조 【재정운용세칙】 이 밖에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 〈제8장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8장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호 2019.10.21. 신설. 전면신설]

제204조 【선거】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205조 【선거권】 ① 본 회의 회원 중 해당학기 학부과정 재학생과 제5조 제2항에 의거해 회원으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② 각 단과대학 및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에 대한 선거권은 해당 단과대학 및 총동아리연합회 회원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권자의 수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6조 【피선거권】 ① 본 회 회원 중 「총선거세칙」 및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1년에 한한다.

제207조 【선거방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후, 다음 각 호에 따라서 당선을 확정 및 공고한다.

1. 경선일 경우 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
  2. 단선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
- ② 투표율이 회원 수의 과반수 미만일 시에는 연장투표를 이를 이내로 실시한다.
- ③ 나머지 단위의 학생회선거는 각 자치회칙 선거방법에 준한다.

제208조 【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총학생회장단 이하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11월내에 시행한다. 세부일정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투표일 2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한다.

제20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본 회의 선거를 공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10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중 1인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3. 총동아리연합회장

4.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중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6.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1인

7. 위 호로부터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선출된 2인

③ 제2항 제7호에서 선출되는 위원은 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추가 모집 위원 또한 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선거에 관한 사무를 공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⑨ 이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선거세칙」을 따른다.

제210조 【재선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제3호, 제4호에서 당선인 중 한 명만 해당될 경우 해당 직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총선거세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새로 발견되어 후보자격이 박탈된 때

6. 이 밖에 「총선거세칙」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2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11조 【이의제기】 이의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 즉시 제기된 이의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모든 결과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지 아니한다.

②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한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만 할 수 있으며, 각 선거

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2항,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 상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을 상정해야 한다.

⑤ 이의제기는 개표결과 공고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다.

제212조 【기타 사항】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세칙」에 의한다.

## 〈제9장 개정절차〉

[시행 2019.10.21.]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제9장 개정절차 1호. 2019.10.21. 제정. 전부개정]

### 제1절 회칙개정

[시행 2019.10.21.] [제9장 개정절차 제1절 회칙개정 1호. 2019.00.00 제정. 전부개정]

제213조 【개정권자】 본 회칙의 개정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

제214조 【개정안 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본 회의 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대표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
3.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1/2 찬성으로 발의
4. 총학생회장의 직권으로 발의

제215조 【개정안의 심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15조를 통해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1차적인 심의권을 갖는다.

제216조 【개정안공고기간】 제출된 회칙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14일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7조 【의견제출 등】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정절차를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8조 【개정 의결】 본 회의 회칙의 개정 의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할 수 있다.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9조 【공포】 개정 공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본 회칙의 개정에 대한 공포는 당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이 하도록 한다. 단, 회원의 열람이 수월한 최소 5곳 이상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칙·세칙·규칙의 온라인 배포 시에는 조문의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포문의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공포기간
  - ④ 공포문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제220조 【개정안 정리】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2절 세칙·시행규칙

[시행 2019.10.21.] [제9장 개정절차 제1절 세칙·시행규칙 1호. 2019.10.21. 제정. 전부개정]

제221조 【세칙·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세칙·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짐을 정한다.

- ① 세칙·시행규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② 세칙·시행규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 ③ 세칙·시행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발의에 관하여서는 제214조를 준용한다.
- ④ 세칙·시행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공고에 관하여서는 제216조를 준용한다.
- ⑤ 세칙·시행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의결에 관하여서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 ⑥ 세칙·시행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공포에 관하여서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 ⑦ 세칙·시행규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제222조 【회칙 위해 금지】 세칙·시행규칙은 본 회칙을 위해하지 못하며 위해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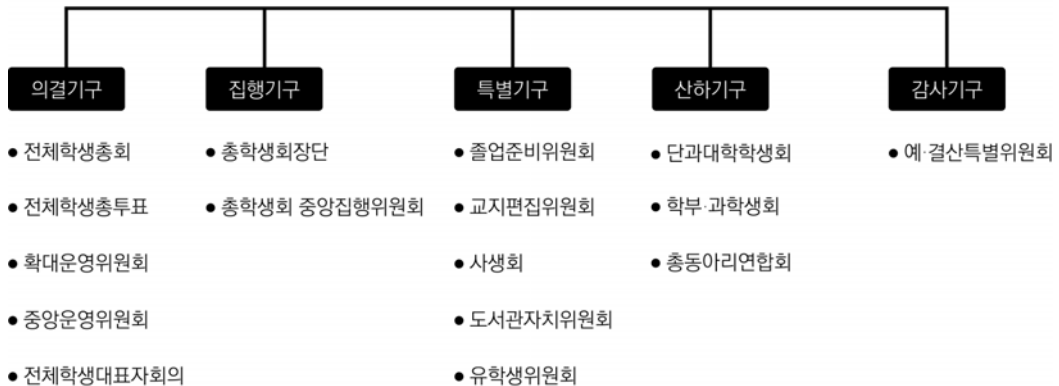
제223조 【세칙 위해 금지】 세칙에 부수된 시행규칙들은 세칙을 위해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은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6장 및 제7장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성심교정 총학생회 기구표〉

# 총학생회



## 2. 학생과외활동

### (1) 학생 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단체란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 요건) ① 모든 학생 단체의 조직 및 등록은 학생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의 설립 취지나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단체로서 신규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 교수를 거쳐 단체 등록 기간 중 학생지원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교내 학생 자치 단체 등록원
2. 기구 편성표
3. 활동 계획서
4. 지도 교수 승락서(지도 교수를 추천한 단체)
5. 서약서
6. 단체 가입 회원 명부
7. 회칙

② 기존 단체는 단체 등록 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지원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 등록 신청서
2. 기구 편성표
3. 활동 계획서
4. 지도 교수 취임 승락서(지도 교수를 추천한 단체)
5. 서약서
6. 단체 가입 회원 명부
7. 전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서

제5조(승인) 학생단체는 등록 신청을 마친 후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제6조(임원) 임원은 그 단체의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되되, 그 명단은 3일 이내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 ① 회원은 단체의 신규 및 재등록 시에만 모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에 한하며, 2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③ 1학년은 2학기부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단체의 재정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실) ① 각 단체마다 하나의 단체실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단체실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1. 대학생 본분에의 일치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여부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공헌 여부
3. 행사 계획의 건전성과 활동의 모범성 여부
4. 과거 2년간의 활동실적 여부
5. 단체실의 효율적인 관리 여부

③ 단체의 성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지원 및 단체실의 배정을 취소하거나 단체실을 박탈할 수 있다.

1. 타 대학과의 연합 단체로서 본교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2. 단일 학과 또는 전공이나 동문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3.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건전하지 아니한 단체
4. 과거 1년간의 활동 실적이 미진한 단체
5. 단체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단체
6. 활동 실적 보고 및 결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
7. 기타 본교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단체

제10조(집회 및 행사) ① 집회를 갖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일 5일 전까지 행사·집회계획(신청서)을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예술 및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행사 개요, 예산 관계, 대본 및 주제 내용의 요약, 지도 교수 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행사·집회계획(신청서)을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첨부물 및 해당 대학 지도 교수와 학생취업지원처장 또는 해당기관 행사 책임자의 연서로 된 참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사 허가원을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행사가 수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도 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학생회비의 보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을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본조 제3항의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15일 전까지 총장 승인을 받아 허가한다. 다만, 중간 또는 기말 고사(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 포함) 개시 10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는 각 단체의 집회 및 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단체는 행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 보고서를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비를 보조받은 행사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유인물) ① 단체는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등과 같은 유인물을 제작할 경우 그 초안과 계획(신청서)을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소정 용지로 한정하고 그 매수도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조정한다.

제12조(간행물) ① 단체는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간행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봉사 활동) ① 봉사 활동은 학과 또는 전공 및 단체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봉사 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봉사활동시 학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방학시작 30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하고,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 활동 계획서
2. 예산 계획서
3. 참가 학생 명단

④ 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1개 단체의 단원수는 20명 이상, 봉사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봉사 단체는 대학과 총학생회(총학생회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봉사 활동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봉사 활동 결과 보고서, 결산서, 자체 평가서를 학생취업지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 박탈)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 활동 운영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할 경우
2.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제15조(해체) ① 등록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단체는 단체 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 해체로 간주한다.

②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체 사유서
2.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해체 동의서
3. 지도 교수 의견서
4. 단체의 간판과 실 열쇠

제17조(활동의 잠정적 중지) ① 졸업 준비 위원회, 교지 편집 위원회 등의 단체는 업무(앨범 및 교지 제작)가 끝나면 다음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활동을 중지한다.

② 실의 열쇠는 업무가 끝나는 즉시 학생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 활동 운영 자문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제4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15조, 제17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3조, 제17조)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학생 간행물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 세칙은 학칙 제94조(학생간행물 및 홍보물) 및 학생 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그 편집에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이 참여하며, 본교 학생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간행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본교 전체 학생 대상 간행물
2.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 대상 간행물
3. 동아리 대상 간행물
4. 개인 대상 간행물

제4조(간행물 발간의 허가)

①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발간할 때 다음의 서류를 지도 교수를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발간 계획(신청서)
2. 인쇄 내역서
3. 원고
4. 예산서(개인이 발간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생 활동 운영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발간을 허가한다.

제5조(간행물의 배포)

①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에 다음의 자료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부 승인원
2. 배부 계획서
3. 간행물 5부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배포를 허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시행 세칙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시행 세칙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시행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개정세칙(제4조, 제5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분포〉



(3) 동아리의 목적과 내용

가. 공연예술분과

- ① 밴드 실험 : Soft Rock, 대중적인 재즈, R&B 등의 폭넓은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로서 교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전문적인 연주와 그 전수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가현회(클래식기타반) : 기타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감정을 선율로써 표현하고 또한 학우애와 인격을 함양하여 클래식 기타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내용으로는 매년 신입생활영연주회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동안 닦은 실력을 발표하여 회원 상호간의 격려와 학우들의 조언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기한다. 또한 기타의 올바른 주법과 이해를 위해 하계·동계 M.T.를 실시하며 전국 대학생 기타연합회 회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여 본 대학의 대외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③ C.D.Z(Catholic Univ. Dancing Zone) : ‘춤과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를 대중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함께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F.O.M(freedom of mouth) : freedom of mouth의 약자 그대로 입으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랩과 R&B 등 흑인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 ⑤ 더버스킹(The Busking) : 길거리 공연을 위주로 활동하는 동아리로 악기,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며 음악을 매개로 하여 관객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2회의 정기 버스킹과 카페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 ⑥ SACRED(그룹사운드) : 음악의 전반적인 지식을 교환하고 합주연습과 동시에 공연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성취감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우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⑦ 극예술연구회 : 대학극을 이해하고 연마하여 대학 고유의 연극으로 발전시키며 공연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며 대학극의 순수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신입생 환영공연과 추계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매주 정기모임과 연극관람이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예술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연극이론을 공부하며 공연을 통해 모든 연극분야에 관한 기초수업과 연기실습을 하고 있다. 특히 1983년에는 중앙학도호국단 주최 전국대학 연극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을 하여 대내외로 학교의 이름을 알리는데 공헌을 하였다.
- ⑧ GIGA HITZ :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악기없이 사람의 Voice로만 Harmony를 추구하며 회원간의 친목도모, 아카펠라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 ⑨ 화랑 : 화랑은 일반동아리와는 달리, 학교를 홍보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톨릭대를 밝게 빛내는 응원단이 되기 위해 2005년 5월 13일 창설되었다. 학교 내외 다수의 행사를 통해 학교를 빛내고 있다. 대동제, 체육대회, 다맛제 등 교내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수많은 외부 공연과 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한다. 2007년 3월에는 MBC ESPN CHEER UP KOREA 전국 치어 대회 본선에 진출, 4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주마다 정기적인 활동을 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 ⑩ TONG : 가장 대중적인 악기인 통기타를 다루는 동아리로 주2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기타를 배우고 다양한 공연을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임.

## 나. 문화레저분과

- ① Ani.C.A.T : 가대 유일 만화동아리로서 Animation&Cartoon의 약자이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Ani.C.A.T은 상영회, 전시회, 코스프레, 회지발간 등 만화와 애니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폭넓게 해 나가고 있는 동아리이다.
- ② 모꼬지 : 가톨릭대학교 유일 여행 동아리이며, 주로 학기 중에는 친목을 다지고 방학 중에는 동아리 구성원끼리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기도 한다. 여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의 함양을 기원하며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통해서 건전하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③ 산악회 : 1964년에 등록된 역사 깊은 동아리로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재학생 중 산악인이 되기 위하여 등반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산악운동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산행은 휴일과 연휴를 이용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부활절휴가와 방학, 연휴를 이용하여 춘계, 하계, 추계 등 장기등반을 하며 1달에 2번씩 일일등반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 ④ 와락 : 가톨릭대학교 유일 와인동아리로 WARAK은 와인의 “와”와 즐긴다는 의미의 “樂”으로 이루어진 와인동아리입니다.
- ⑤ CINEPHILE : 영화관람·토론·세미나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영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을 유도하며 나아가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 공간 확보에 취지를 둔다.
- ⑥ 더게임 :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게임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단비 같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동아리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 봉사분과

- ① 로타랙트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지도력의 양성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육성을 꾀하는 로타리 클럽과 연관된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전공분야의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성심안에서 지역사회 봉

사와 책임감을 함양시키고자 1987년 3월 25일에 설립된 동아리이다. 봉사를 근본목적으로 하여 크게는 국제이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활동하는 모임이다.

- ② 사랑살기 : 사랑살기는 1975에 창립된 교육봉사 동아리이다. 부천시 내에 있는 여러 기관과 연계를 맺어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매주 수요일 1:1교육봉사를 진행한다. 정기 활동 이외의 주요행사로는 기관 아이들과 진행하는 ‘대학탐방’,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고민해우’, 수익금을 기부하는 판매행사, 조혈모세포이식을 요하는 백혈병 아동과 공여자 사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조혈모세포 캠페인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서적인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가톨릭대 중앙 유일 교육봉사동아리이다.
- ③ 농락 : 저희 농사짓는 즐거움 농락은 가대유일중앙환경동아리로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학교 뒷산에 위치한 텃밭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컵샐러드나 축제기간에 고기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내의 카페의 컵홀더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이면지를 수거하여 노트를 만드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어린이센터에서 정기적인 교육봉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라. 체육분과

- ① 코트랑 : 1980년에 창단된 코트랑은 테니스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여 건강한 신체를 얻고, 함께 테니스를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간의 우의와 교수, 타교생과의 친목을 도모한다.
- ② 태권도부 : 본교 학우들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학교분위기를 쇄신함과 동시에 개인의 심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둔다.
- ③ REVERSE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최초의 농구동아리로서 학우들의 체력증진과 운동을 통한 정신적 건강과 각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체육시설 복지에 힘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④ KICK - OFF : 본교생들의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 외 축구경기를 통한 학우들 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감 형성을 꾀하기 위해 존립한다. KICK - OFF가 주선하는 운동경기를 통해 학우들 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각종 축구대회 참가로 학교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존립하는 동아리가 바로 킥오프(KICK - OFF)이다.
- ⑤ 가로채기 : 가로채기는 1996년도 학교에서 농구하는 농구인들이 농구라는 단어 하나에 끌려 합심하여서 세워진 모임이다. 2007년도 총장배 5:5대회와 2006년도 교내 3:3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바 있다. 2학기에 5:5대회를 개최하며 주마다 정기적인 활동을 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 ⑥ 텀블러즈 : 텀블러즈는 2009년 처음 창단하여, 2010년 정식동아리로 승인 받았으며, 공중제비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가톨릭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공중제비하는’이라는 의미가 체육분과 동아리로서의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점을 통해 텀블러즈라는 동아리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텀블러즈라는 야구동아리로서 야구를 배우면서 야구를 하고, 보고, 즐기는 동아리입니다.

## 마. 학술분과

- ① 호우회 : 1978년 6월에 창립되었으며 역사토론동아리로 친목, 봉사, 학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활동내용으로는 학술세미나, 독서토론회, 축제기간 중 상품판매, 국군장병 위문카드, 하계봉사, 국군묘지헌화, 회지발간 등이 있다.
- ② A.L.A(AFKN Listening Association) : 명칭에서 말하고 있듯이 AFKN 방송청취를 통하여 영어 청취력과 아울러 회화력 향상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1979년에 창립된 본회는 전국대학 A.L.A. 연합회에 가입되어 교내활동은 물론 대외적 활동은 물론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회원 간의 친목과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간담회, M.T. LT. 홈커밍 등을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③ K.U.S.A(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1968년에 창립되어 지성의 요람인 대학 내의 학생들에게 유네스코의 이념을 전파하고 지적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학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 간의 토의 및 토론, 학술 발표가 있으며 오랜 전통을 가진 동아리로서 다양한 분야의 선후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있다.
- ④ 골든크로스(GOLEN CROSS) : 99년 10월에 창립하여 주식에 전반적인 이해와 증권투자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학습 및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문학연구회 : 학술연구 성격을 띤 동아리로서 전반적인 문학연구를 통해 국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회원 간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행사로는 축제기간 중 서적전시 및 서적판매로 학내 학풍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여행과 답사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문학답사를 실시하며 2학기 학술제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경험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학년별 주 1회 강독과 연 2회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문연』이라는 회지에 실어 한 해의 공부를 마무리 짓는다.
- ⑥ 37.5 : 프레젠테이션 실력과 PPT 자료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는 자기 개발 모임으로,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주제를 다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 삼칠오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활동 목적이다.
- ⑦ SHIELD :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동아리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동아리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내외에서 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대표 활동으로는 정기 순찰 및 안심귀가서비스, 부천원미경찰서와의 협업 캠페인 및 행사 진행, 학교 부근 치안 개선 활동이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잘못되어 있는 인식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학생들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학우들과의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이 목표이다.
- ⑧ COMA : COMA는 Control Master의 약자로 IT동아리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획 및 디자인 팀으로 이루어져 워하는 공부와 IT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 바. 종교분과

- ① J.O.Y :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의 약자로서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조이선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표를 가진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로서, 매주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7단계 제자훈련을 통한 조직적인 성경공부, 방학 중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성경과 회화를 공부하는 Summer English Class, 캠퍼스 및 민족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능력있는 영적지도자 준비를 위한 Campus Leader Training,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내용의 수양회가 있으며 이외에는 각종 M.T, '친구초청 전도집회', '체육대회', '등산', '소풍', 선후배와의 만남의 장인 'Home coming Day'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② I.V.F(Kore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모토로 삼고 있다. 소위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설명되는 복음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한다. 우선적으로는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알아가고, 소외된 이들과 목소리를 같이하며 연대함으로써 실천하고 있다. 나의 안녕을 넘어 온 세계의 회복(총체적 복음)을 위해 오늘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선교단체이다. 매주 모임은 전체 구성원이 모이는 큰모임부터 작은 그룹으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소그룹, 원투원(일대일 만남)이 진행된다. 종강 이후에는 13개 학교와 연합해 수련회를 진행한다.
- ③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R.브라이트 박사에 의해 창설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김준곤 박사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 서울 부암동에 본부를 두고 있다. CCC는 전도, 육성, 파송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으로는 대학별 순모임, 정기모임, 정기체플 등이 있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마다 전국 대학생 만명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름수련회는 CCC의 큰 행사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단기선교와 금식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상명령 성취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대학생 선교회이다.
- ④ 소피바라(가톨릭학생회) : '소피바라'는 교내 총동아리 연합회 종교분과, 교내 교목실에 속해 있는 가톨릭 학생회이다. 서울 38개교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소속이기도 하다. 가톨릭 학생회는 대학교 안의 하나의 동아리로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가톨릭을 대학교 안에 알리야 할 청년사도로서 의무를 가진 학생 자치조직이다. 또한 대학생으로서의 내적신앙을 돌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뜻이 있다.  
소피바라의 핵심 활동은 크게 교내 활동과 서가대연 활동으로 나뉜다. 가장 주된 교내 활동인 주모임 시간에는 서로의 일상생활도 나누고, 성경읽기와 나눔 및 교리부와 문화부 활동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입학미사 봉사, 교목실 단합대회, 성모의 밤 행사, 조혈모세포기증운동, 창립제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서가대연 활동으로는 연합주모임, 연합소풍, 체육대회, 팍스제, 농활, 새식구 한마당 등 정말 다양한 기회로 가득 찬 활동을 한다.

### 3. 학생상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칙 제69조(포상), 제70조(징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생
2. 모범이 될만한 선행 학생
3.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학생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5.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제3조의 포상의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정 교무위원회의 또는 관련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및 주임교수 의견서 각1부

제5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교정교무위원회의 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포상의 기록) 학사지원팀 및 학생지원팀에서는 포상 내용을 수상대상 및 학적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추천서, 기타 증명서 발급시 이를 명기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2. 학생 지도상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
4.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5. 학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시킨 학생
6.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가한 학생
8.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8조(징계의 발의)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제7조의 징계처분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징계위원회의 또는 관련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의견서 1부

제8조의2(학생징계위원회) 학생 및 학생단체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징계위원회를 둔다.

1.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활동자문위원으로 한다.
2. 학생지원팀에 징계요청 서류가 접수된 후,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이 청구되면 학생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근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언행이 불량한 학생
2.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3. 고사 중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없이 공고물 및 게시물을 비지정된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5. 성희롱, 성추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한 학생
6.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1조(유기 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교내질서를 문란케한 학생
2.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5. 허가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배부한 학생
6. 두번 이상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
7.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생
8.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2조(무기 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폭력을 행사한 학생
2. 고의로 교내질서를 심히 문란케한 학생
3. 고사 중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학생
5. 금품 및 물품을 절취 또는 갈취한 학생
6. 학교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손시킨 학생
7.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생
8.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학생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이 확정된 학생
3. 재학 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
4.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5.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생

- 6.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4조(징계의 결정)

- 1. 징계처분의 결정은 교정교무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 2.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이나 참고 발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 지도)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권리 정지) 1.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가가 금지된다.
- 2.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 3.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본교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7조(징계의 해제) 1. 근신 및 유기정학의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해제된다.
- 2. 무기정학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해제한다.

제18조(징계의 감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징계대상 학생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통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교무처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정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규정(제4조, 제7조4호,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임규정) 이 규정 제5조의 포상의 결정은 해당 교정 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8조의 2)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장학금

### (1)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성신교정, 성의교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부(전공)·학과별 배정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사 및 확정, 단 교정 부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장학금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부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선정 위촉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1.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2.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시행 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례 조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3장에 의거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적용 범위) 본교 성심교정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 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9.1, 2013.11.21>

제4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및 국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

②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 별표 1-1,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3.11.21., 2017.2.14.>

③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3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11.21>

④ 교내·외 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또는 연구보조비는 장학금으로 간주한다.

⑤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2.6.1, 개정 2013.11.21>

제5조(수혜 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을 학비감면으로 수혜 받은 자가 당해 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월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4.17.>

제6조(지급 대상) 본교 성심교정의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2.14.>

1. 신입생 중 입시요강에 의한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가정 사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3.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4.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6. 본교 성심교정 교직원의 직계 자녀
7.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2017.2.14.>
8. 성직자, 수도자로서 소속 원장이나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9.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신청 방법) 장학금의 신청은 매학기말 학생취업지원처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온라인신청을 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단,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소속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1.>

[전문개정 2009.9.1]

제8조(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중 복학자에게는 최우수·우수·성적향상·희망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 및

가정사정곤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지원장학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1. 복학 및 재입학자
2. 학칙 위반자
3. 근로 평가가 'F'인 자

제9조(추천 기준) 각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개정 2006.3.1., 2013.11.21>

1. 교내 장학금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자(별표 2 참조)
2. 가계 곤란자

제10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취업지원처는 각 학부(전공)·학과로부터 선발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및 기타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장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2.4.17, 2013.11.21>

제11조(지급 시기) 교내 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급 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확정된 장학생의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

제13조(중복 수혜) 장학금은 정규학기동안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다.

1. 성적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
2. 장학위원회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장학금

[전문개정 2009.9.1.]

제13조의 2(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4.17.>

1. 신입생 장학제도에 근거하여 수혜받는 특전사항
2. 국제교류처 주관 국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수혜하는 국제화 장학금
3. 각종 장학기금 장학금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학금

제14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1. 등록이월하지 않은 휴학자
2. 제적 및 자퇴자
3. 근로평가가 불량한 자
4.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2017.2.14.>

제15조 삭제 <2009.9.1>

제16조(교내장학생 배정) 교내장학생은 각 학부(전공)·학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장학금 기부) ① 성적우수장학생(최우수, 우수)은 수혜 받은 장학금을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1.>

② 전항의 기부된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9.1.>

③ 장학금을 기부한 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학적부 등재, 장학증서 수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학부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2017.02.14.>

④ 삭제 <2013.11.21>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교학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

다.<개정 2012.4.17.>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규정(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2, 별표 4)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인턴십 및 근로장학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1)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별표 1, 별표 1-2, 별표 2)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학생부우수자'는 2014년 10월 22일, '가톨릭지도자추천'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개정(별표 2, 별표 3)은 201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6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1-2)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1-1, 별표 2)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약학대학 신입생 장학금'과 [별표 1-1]의 '편입학외국인장학금'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별표 2]의 '학업우수장학 및 한국어향상장학, 도우미장학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9학년도 1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2)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2)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2)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별표 2]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입생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최소 이수 요건	특전
수시모집	진리 (최우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8학기	입학 후 17학점, 3.5이상	-
	사랑 (우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				
	봉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본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에 합격한 자로 입학전형 성적이 각 모집단위 상위 1위인 자		1학기		
	잠재능력 우수자	본 대학의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모집에 합격한 자로 입학전형 성적이 각 모집단위 상위 1위인 자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 면학	수시 최초 합격자 상위 30%	500만원/1년	1년 (1학년 재학 기간)	입학 후 17학점, 3.5이상	
정시모집	진리 (최우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8학기	입학 후 17학점, 3.5 이상	1. 4년간 면학장학금 매년 500만원 지급 2. 기숙사 선발시 우선권 부여 3. 해외탐방 기회 부여(1,2학년 방학 중 실시) 4.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5. 장기(1년간) 해외연수경비(수업료+기숙사비+항공료) 지급
	사랑 (우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1. 해외탐방 기회 부여(1,2학년 방학 중 실시)

구분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최소 이수 요건	특전
		평균)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				2.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3. 방학중 단기(1회) 해외연수경비(연수비+기숙사비+항공료) 지급
	봉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		4학기		1. 해외탐방 기회 부여 1,2학년 방학 중 실시)
	비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각각 2등급 이내 ※ 단, 최초합격자 기준 모집단위별 상위 15% 이내(소수점 절상)만 지급		2학기		1. 해외탐방 기회 부여(1,2학년 방학 중 실시)
	바이오메디컬화학 공학과 면학	정시 최초 합격자 상위 50%	500만원/1년	1년 (1학년 재학기간)		
약학대학	최우수 장학금 (약학 우수A)	입시성적 1등 <1명> (최초 합격생 대상)	수업료 전액	4학기	입학 후 17 학점, 3.5 이상	
	우수 장학금 (약학 우수B)	입시성적 2~3등 <2명> (최초 합격생 대상)	수업료 50%	2학기		
기타	성심추천	소속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수업료의 35%	8학기	입학 후 15 학점 2.5 이상	

- ※ 정시모집 진리, 사랑, 봉사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추가 합격자도 포함함. 단, 비전장학생 선발대상은 최초 합격자에 한함.
- ※ 교차지원자 제외사항 : 자연과학 / 공학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선택자는 장학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단, 생활과학계열에 한하여 사회탐구 선택자도 장학 대상에 포함함.
- ※ 장학금 수혜 기준을 연속 2회 또는 단속 3회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영구히 제외(2014 입학생부터 적용, 단 약학과는 2016 입학생부터 적용)



[별표 1-1] 외국인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명	장학내용	자격기준	지급요건
순수외국인 영어 우수장학	4년 전액 (입학금제외)	TOEFL iBT 100점 이상 취득자 또는 TOEFL iBT 100점에 상응하는 영어 구사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5이상 취득
순수외국인 한국어 우수장학	4년 전액 (입학금제외)	TOPIK 6급 취득자 또는 TOPIK 6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순수외국인 장학A	1년 전액 (입학금제외)	TOPIK 5급 취득자 또는 TOPIK 5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 1학기 - 자격기준에 따라 학비 감면  • 2학기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취득
순수외국인 장학B	1년 반액 (입학금감면)	- 본교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취득자	
순수외국인 장학C	1년 반액 (입학금제외)	- TOPIK 3급 취득자 - TOPIK 3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 입학성적우수자	
Global Scholarship	4년 전액 (입학금포함) 생활보조금 (25만원/월) 기숙사 제공 (4인 1실)	- 해당국 가톨릭교회 추천 (가톨릭지도자 및 가톨릭교장 추천 포함) - 당해국 주재 한국공관 또는 한국 주재 본국공관의 추천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취득
편입학외국인 장학	최초 학기 반액 (입학금제외)	S-TOPIC 4급 취득자 S-TOPIC 4급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자	

※ 외국 국적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 후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 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학 전 기준 어학성적 미 취득 시, 첫 학기에는 신청과목이 제한되며 차기학기(2학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별표 1-2] <신설 2015.11.10., 삭제 2016.9.28.>

[별표 2] 재학생 장학제도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진 리	성적 우수	최우수	각 전공(학과)의 학년별 수석자	수업료 전액	6월, 12월 내부선발
		우수	각 전공(학과)의 성적우수자	수업료의 35%	
		성적향상	항상 직전학기 성적 1.75 이상인 자 중 1.5 이상 성적향상자	60만원	
		학업우수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의 신청자 중 선발	50~300만원 (차등지급)	국제 교류팀 선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향상	입학 후 6개월 이내 S-TOPIC 4급 이상 증서 제출자	30만원	
입학 후 12개월 이내 S-TOPIC 4급 이상 증서 제출자	20만원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사 랑	가계 관련자	THE Dream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중 가계곤란자	수업료 범위(입학금 제외)내에서 지원	6월, 12월	
		인턴십	행정부서 및 교내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자	일정액 ※근무시간(120시간)에 따른 매년 변동 지급 적용함	학기초	
		근로	행정부서 및 교내기관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자	일정액 ※근무시간(근로A 200시간, 근로B 120시간, 근로C 90시간)에 따른 매년 변동 지급 적용함	학기초	
		희망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상위자	수업료 범위(입학금 제외)내에서 지원	2월, 8월	
		가족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우선 선발(저학년 소속 교정에서 지급하며,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수업료의 50% 이내(既수혜 장학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전액)	학기초	
		나눔	가계가 곤란한 본교 재학생	기부된 금액	학기초	
봉 사	성취	고시	A	본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의 최종합격자 (행정, 외무, 입법, 법원행정, 지방,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수업료 전액 (졸업시까지)	학기말
			B	본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의 1차합격자 (행정, 외무, 입법, 법원행정, 지방,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수업료 전액 (1년간)	
			C	본교에서 인정하는 시험의 최종합격자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수업료 전액 (1년간)	
		고시반	고시반 구성원으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65만원	65만원	별도공고
		임용고시반	임용고시반의 구성원으로 지도교수에 의해 추천 받은 자	65만원		
		학술연구	전공(학과)별 연구발표를 통해 전공주임이 추천한 자(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해당 장학금 연구 참가자 수로 나누어 지급)	해당 금액	
국제화	교환학생, 해외인턴십 및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해당 전공, 학과, 부서의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해당 금액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ELP/EEP	ELP/EEP과정 신청자 중 성적우수자	일정액	별도공고	
가톨릭 가족	교직원 자녀	본교 교직원 자녀(명예퇴직자 자녀 포함)	수업료 전액 (명예퇴직자 자녀는 수업료의 50%)	학기초	
	성심추천	성직자 또는 수도회장상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수업료의 35%		
참여	단체장	교내 자치기구 임원	A(수업료 전액), B(180만원), C(100만원), D(65만원), E(50만원)	별도공고	
	도우미	가홍이, 웹진, CUK 프렌즈, 가대사랑, 스타티스트에서 활동하는 학생	팀장(80만원), 팀원(60만원)		
	사회봉사	봉사실적 90시간 이상 우수자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자	55만원	학기말	
	까리따스봉사	까리따스 학생 봉사단원 중 추천 받은 자	60만원		
	멘 토 링	A	북한새터민, 만학도, 편입생, 외국인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와 연계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재학생	최대 100만원	학기초
		C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내생활을 위해 봉사한 자	60만원	
특별	총장	총장이 추천한 자	일정액	내부선발	
	장애학생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받는 장애학생으로 장학금 신청자(직전학기 1.8/15학점이상)	① 중증(1-3급): 200만원 ② 경증(4-6급): 100만원	학기초	
	특별지원	교무위원회,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일정액	내부선발	
	ROTC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50만원		
	전사적지 탐방지원	학군사관 후보생 3,4학년 재학생	일정액		
	군장학생	직업군인인 본교 재학생	수업료의 50%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입은 본교 재학생	일정액	수시	
	북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해당기관의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자	수업료 전액	학기 초	
	보훈	보훈대상자	수업료 전액	학기 초	
	실무실습교육	약학대학 실무실습 대상 재학생	일정액	약학과 내부선발	
	각종 장학기금 (권영운)	기금별 별도 기준	기금별 별도 금액	수시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신청기간
기금 학부 장학금, 정현준 요셉 장학금 등)			

※ 장학금 수혜기준

- 1) 진리장학금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7학점(성적향상은 15학점) 이상, 직전 학기 성적이 각각 4.0(최우수), 3.5(우수), 1.75(성적향상) 이상인 자
- 2) 사랑장학금, 봉사장학금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THE Dream은 12학점, 자연재해, 보훈장학금 제외), 직전 학기 성적이 2.5(THE Dream은 8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보훈장학금은 7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자연재해 제외) 이상인 자 <개정 2012.6.1>
- 3) 성적장학금 동점자 처리기준 : 이수학점수 많은 자 → P/F 과목 학점수 적은 자 → 제1전공 이수학점수 많은 자 → 이수학기 적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P/F과목 신청자 학점 처리기준 : 학기말 총 이수학점 중 P/F 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하며, 성적과 학점 동일 시 P/F 과목 학점수가 적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개정 2018.3.1.>

[별표 3] 교외 장학금 종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1	KSD나눔재단 장학생	성적우수	105	희망드림	가계곤란
2	가송재단	성적우수	106	강릉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	경동송천	성적우수	107	거창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4	구원	성적우수	108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금	단체소속
5	농협우수장학생	성적우수	109	관우장학회	단체소속
6	대학꿈지기	성적우수	110	데이타게이트코리아	단체소속
7	미래인재육성재단	성적우수	111	동래구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	단체소속
8	본술김종한	성적우수	112	동방	단체소속
9	부천장학재단	성적우수	113	동익개발(주)	단체소속
10	산학협동재단	성적우수	114	부여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단체소속
11	삼송장학회	성적우수	115	부여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학금	단체소속
12	송천재단	성적우수	116	부천시	단체소속
13	승국장학금	성적우수	117	삼공장학금	단체소속
14	신라문화장학재단	성적우수	118	서부농협장학회	단체소속
15	신양문화재단	성적우수	119	세종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	단체소속
16	안동시 장학금	성적우수	120	영도육영회	단체소속
17	안산꿈기움장학금	성적우수	121	우리관리주식회사	단체소속
18	영풍문화재단	성적우수	122	울산온산소방서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19	웅진군덕적면주민	성적우수	123	원진신약	단체소속
20	우수학생육성 교환학생	성적우수	124	인제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1	음성장학회	성적우수	125	인천강화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2	이공계 국가장학생(수시우수유형)	성적우수	126	인천계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3	이공계 국가장학생(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성적우수	127	인천공단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4	이공계 재학중 우수자	성적우수	128	인천광역시남구청 통장자녀	단체소속
25	이공계국가장학생(성적우수)	성적우수	129	인천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6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대학교)	성적우수	130	정선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7	인문계 재학중 우수자	성적우수	131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8	인문사회계 국가장학생(수시우수유형/2년지원)	성적우수	132	철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29	인문사회계 국가장학생(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성적우수	133	춘천소방서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0	일주학술문화재단	성적우수	134	충남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1	정산장학재단	성적우수	135	충남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2	정수장학회	성적우수	136	충남 연기소방서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3	정헌재단	성적우수	137	하동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체소속
34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성적우수	138	하정학술장학회	단체소속
35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장학금	성적우수	139	한국광해관리공단	단체소속
36	케이티 창의혁신장학	성적우수	140	한국노총장학	단체소속
37	케이티문화재단	성적우수	141	경기도민회	지역출신
38	키움증권 금융장학생	성적우수	142	과천시애향장학회	지역출신
39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	성적우수	143	광명시인재육성장학	지역출신
40	한국지도장육성장학재단	성적우수	144	광주시민장학회	지역출신
41	교육기부사업	학생조교/ 인턴십	145	군포사랑장학회	지역출신
42	국가근로(도우미)	학생조교/ 인턴십	146	김제사랑장학재단	지역출신
43	국가근로(방학중)	학생조교/ 인턴십	147	김포시민장학회	지역출신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44	국가근로A	학생조교/ 인턴십	148	보령시 이통장	지역출신
45	국가근로B	학생조교/ 인턴십	149	삼척향토장학재단	지역출신
46	국가근로C	학생조교/ 인턴십	150	서울제주도민회장학금	지역출신
47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학생조교/ 인턴십	151	성남시장학회	지역출신
48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학생조교/ 인턴십	152	성동구 장학	지역출신
49	kdb vision	가계곤란	153	수안군장학회	지역출신
50	강남구청	가계곤란	15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지역출신
51	강원도관광지역저소득층	가계곤란	155	웅진군장학재단	지역출신
52	계양구사회복지	가계곤란	156	완주군애향장학생	지역출신
53	국가장학금 유형 I	가계곤란	157	은평구민장학재단	지역출신
54	국가장학금 유형 I (다자녀)	가계곤란	158	은현장학재단	지역출신
55	국가장학금 유형 I (추가승인분)	가계곤란	159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지역출신
56	국가장학금 유형 II	가계곤란	160	제주삼다수재단	지역출신
57	기스	가계곤란	161	제주시노형동	지역출신
58	두산연강재단	가계곤란	162	제주장학재단	지역출신
59	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가계곤란	16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역출신
60	롯데장학재단 장학	가계곤란	164	종로구장학회	지역출신
61	마포꿈나눔장학금	가계곤란	165	태백시	지역출신
62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가계곤란	166	태백시민향토장학금	지역출신
63	미래드림	가계곤란	167	평택시 애향장학회	지역출신
64	미래에셋 해외교환	가계곤란	168	포항시장학회	지역출신
65	미래우학	가계곤란	169	나눔고리기금	장애인
66	바로로	가계곤란	170	디딤돌	장애인
67	복사골청운	가계곤란	17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68	사랑드림	가계곤란	172	GKS 우수교환학생	기타
69	사랑드림(ETS TOEFL)	가계곤란	173	GKS 우수자비유학생	기타
70	사랑드림(KGC인삼공사)	가계곤란	174	GKS 한일대학교류	기타
71	사랑드림(대한LPG협회)	가계곤란	175	IBK기업은행(역곡지점) 장학생	기타
72	사랑드림(범한판토스)	가계곤란	176	KRX DREAM 장학	기타
73	사랑드림(삼성)	가계곤란	177	tvN 대학토론배틀4 장학금	기타
74	사랑드림(한국화웨이)	가계곤란	178	경인제일교회 장학	기타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번	장학명	장학분류
75	사리원시 봉산군 장학회	가계곤란	179	공군조종	기타
76	상록장학금	가계곤란	180	김미경의 파랑새 장학금	기타
77	서울희망장학금	가계곤란	181	노스페이스 드림	기타
78	성심동문회	가계곤란	182	농어촌희망재단	기타
79	성심수녀회	가계곤란	183	리즈 디엔에이	기타
80	성음	가계곤란	184	메가스터디 팀플 장학금	기타
81	실직자녀장학금	가계곤란	185	백운재단 장학금	기타
82	아산	가계곤란	186	보훈	기타
83	아프로에프지장학회	가계곤란	187	석성장학회	기타
84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가계곤란	188	수도권특성화장학	기타
85	안양시 저소득복지기금	가계곤란	189	수원사랑장학재단	기타
86	요안나 장학회	가계곤란	190	안산시 다자녀가정 학자금	기타
87	요안나(2015~2학기 고지서감면)	가계곤란	191	안스코퍼레이션 장학회	기타
88	우덕재단	가계곤란	192	안젤드림	기타
89	우수드림	가계곤란	193	양주시희망장학재단	기타
90	우수드림(학업장려비)	가계곤란	194	연강재단	기타
91	우수인력양성대학	가계곤란	195	오성장학재단	기타
92	이공계저소득층자녀장학금(과학)	가계곤란	196	용인시시민	기타
93	인송문화재단	가계곤란	197	원아시아클럽서울 장학	기타
94	인천광역시 월디장학회	가계곤란	198	일산장학회	기타
95	전북애향장학재단	가계곤란	199	재암문화재단	기타
96	주심	가계곤란	200	지정기부	기타
97	지일장학금	가계곤란	201	청합장학회	기타
98	티오에프장학	가계곤란	202	테크플러스장학	기타
99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PG협회)	가계곤란	203	평화장학금	기타
100	푸른등대 기부장학금(한국화웨이)	가계곤란	204	하이트진로 장학	기타
101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가계곤란	20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기타
102	하남시민	가계곤란	206	해군장학생	기타
103	하영호 장학재단	가계곤란	207	해성문화재단	기타
104	한국방정환재단 복지장학	가계곤란	208	홀트아동복지회	기타

[별표 4]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신설 2013.11.21.>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책정	한국장학재단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I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본교 별도 책정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별도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 5. 학생병사안내

### 1) 재학생 입영연기

#### 가. 내용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나.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 다.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2년 제	3년 제	4년 제	5년 제	6년 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4 학기제	5,6 학기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 라.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마.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바. 징병검사, 입영원 출원과 같은 기타 병무관련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http://www.mma.go.kr)) 참조.

## 2) 학생군사교육단

제207학생군사교육단은 2005년 11월 3일자로 국방부령에 의거 창설되었으며, 2007년 3월 9일 창설식을 실시하여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 학군사관후보생 규정

#### 가. 지원자격

- 1) 정시선발 : 본교 2학년 남·여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2) 사전선발(예비 ROTC 선발) : 본교 1학년 남·여 재학생으로 2학년 진학 및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3)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3학년 복학이 가능한 자
- 4) 군인사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5) 각 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하지 아니한 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는 제외)
- 6) 대학성적이 평점 C학점(2.0) 이상자로 신청학점의 80% 이상 취득자  
(성적부진으로 1회 이상 유급자는 선발 제외)

## 나. 선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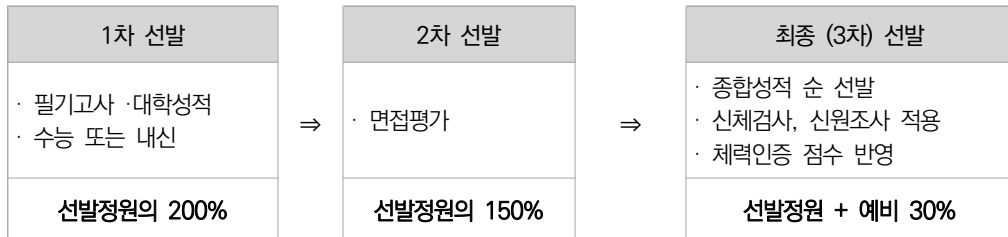
### 1) 평가요소별 배점

구 분	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최종) 평가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내신 성적(선택)	면접 평가	체력평가	신체 검사	신원조사
2학년 남자(정시선발)	1,000	200	100	200	400	100	합·불	최종 심의 시 반영
2학년 여자(정시선발)	1,000	200	100	200	400	100	합·불	
1학년 남자(사전선발)	900	200	-	200	400	100	합·불	
1학년 여자(사전선발)	900	200	-	200	400	100	합·불	

※ 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 / 불합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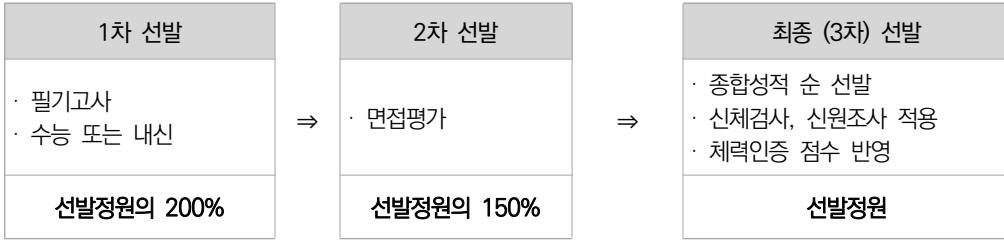
### 2) 선발방법

#### ·2학년 남·여학생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시 학군단 및 권역별 예비 서열 순으로 대체(12월까지)

·1학년 남·여학생



※ 예비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음

- 3) 지원서 접수방법 : 3월~4월 사이 인터넷 지원접수 후 학군단 행정실로 서류 제출
- 4) 구비서류 : 지원서 1부, 수능 또는 고교생활기록부, 신분증 사진, 대학성적증명서(2학년만 증명사진)
- 5) 필기시험 : 지적능력검사, 국사, 직무성격/상황판단검사, 인성검사
- 6) 가점 : 한국사 점수 신규반영 2점, 한국어 점수 신규반영 2점
- 6) 국민체력검정 : 체력평가 인증 3등급이상 100점(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제출)  
교차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0m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심폐지구력(20m 왕복오래달리기) 등
- 7) 면접 : 심사기준에 의거 실시
- 8) 신체검사 : 군병원(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실시
- 9) 1차 선발 : 필기고사, 대학성적 및 인성검사 합격자(사전선발은 대학성적 미반영)
- 10) 2차 선발 : 면접평가
- 11) 체력평가, 신체검사 : 2차 합격자에 한해서 의뢰
- 12) 최종선발 : 신원조회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

**다. 학군사관 후보생의 특전**

1) 후보생 기간 중

- 가) 훈련에 소요되는 피복, 교재, 기타 장비를 군에서 지급 (2년간 매월 교보재비 지원)
- 나) 병영훈련 기간 중 사관후보생의 신분예우 (육군 휴양시설 이용, 문화공연 외 혜택)
- 다) 국내 및 국외 군사문화 탐방 실시
- 라) 조직 관리이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마) 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후보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 바) 후보생 합격자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 200만원

2) 장교로 임관 후

- 가) 장교로서 최단기간 복무(2년 4개월)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 가능
- 나) 장기 지원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다) 군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라) 임관시 연봉 약2,400만원 수준, 전역시 약 3,5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마) 각계 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3) 전역 후

가) 학군사관 후보생 입단과 동시에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 60여 년의 역사와 약 20만여 명의 동문이 사회 각 계층에 분포

나) 사회전반에 ROTC 선호로 전역 후 높은 취업률 및 리더십을 고려 우대

### 라. 군사학 교육과정 및 방침

1) 학교교육 : 분대전투, 안보교육, 지휘훈육, 체력검정, 독도법, 정신교육, 인성교육 등 주 6시간  
학기별 12주 실시(3학점)

### 2) 병영훈련

가) 방학기간 입영훈련 12주

· 기초군사훈련 4주, 전투지휘자훈련 4주

· 전투지휘자훈련 4주 (3~4학년 중 1회 선택)

· 야전지휘자훈련 전 4주

### 마. 병과분류

1) 학군사관 출신 장교는 법무, 군의, 치의, 군중병과를 제외한 모든 병과의 장교가 될 수 있음

2) 학군단장은 개인의 전공과목, 자격증, 군사학 성적, 신체조건, 희망병과를 고려하여 심의 후 병과분류 상신

3) 학생군사학교장은 각 학군단에서 상신한 자료에 의거 병과별 소요를 고려하여 최종병과 결정

## 2. 기타

학군사관 및 군장학생 선발, 교육, 병과분류, 임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군단 행정실에 문의  
(전화 : 02-2164-4232, FAX : 02-2164-4233)

## 6. 의료복지제도

### 1) 보건실 운영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능률을 높이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 (1) 일반질환관리, 안정실 운영

증상에 따른 투약, 상처치료 및 부상처치와 안정실을 운영한다.

#### (2) 응급질환관리

즉각적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확인하며 추후 관리한다.

#### (3) 성인병관리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며 비정상인 경우 자가 관리 방법 및 진료를 권유한다.

#### (4) 보건교육

상태에 따른 개별적 건강관리법을 교육하고 건강정보를 게시한다.

#### (5) 감염병관리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을 따른다.

#### (6) 수유실관리

모유수유를 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편안한 착유공간을 제공한다.

#### (7) 비상약품관리

특정부서와 학생 및 교직원의 교내외 행사 시 필요한 비상약품을 신청하면 비상약품함을 제공한다.

#### (8) 학생상해보험관리

재학생이 교내 또는 대학이 지원하는 외부행사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한 상해보험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관리한다. (상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비에 대한 지원)

#### (9) 금연클리닉

부천시보건소에서 파견한 금연상담사와 개별면담(이산화탄소 농도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금연행동수정요법 교육, 6개월간의 추후관리)을 받도록 관리한다.

2학기 중간고사 다음 수요일부터 5주간 4회 면담을 실시한다.

## 2) 의료비 감면

병원명	주 소	대표전화번호	구비서류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1588-1511	감면번호 또는 감면확인서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부천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1577-0675	
은평성모병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21	1811-7755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1577-8588	
인천성모병원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재학증명서
대전성모병원	대전시 중구 대흥로 64	1577-0888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li> <li>-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li> <li>- 일반대학원생</li> <li>- 특수대학원생</li> <li>- 외국인교환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료, 재진료 100%</li> <li>-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생, 수료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li> </ul>

# 성의교정

## 1. 학생준칙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본 대학교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며 건전한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준칙을 둔다.

### 제 1 장 신상기록부와 학생증

- 제1조 학생은 입학등록 완료 후 성의교정 홈페이지의 가톨릭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상기록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2조 학생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학생증을 항상 좌측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  
제5조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우리은행 서울성모병원지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 2 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8조 학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 결사시에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 결사시 지도교수를 두되 본 대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회는 단체 결사가 승인된 단체에 한한다.  
제11조 교내에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제12조 승인을 받은 모든 자치단체(동아리)는 2학기에 조직갱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생은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 제 3 장 학외 행사 참가

- 제14조 학외에서 주최되는 행사에 학생이 참가할 때에는 승인된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학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 장 학생징계

제15조(학업성적으로 인한 징계)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는 학칙 제43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된다.

1. 의예과 및 의학과

- 1) 해당 교과목(단위과정) 유급은 최종 재시험에서도 각 교과목(단위과정)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 2) 출석 미달 유급은 매 교과목 담당교수(단위과정 책임교수)가 인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1/4를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한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불응할 경우에는 유급 처리한다.
- 4) 학점미달 유급은 70점 미만인 학점의 단위 수(통과/미통과로 평가하는 과정 포함)가 학년별 총 학점의 1/3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학년말에 결정한다.
- 5) 유급은 의예과의 경우 1회, 의학과의 경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간호학과

- 1) 학기말 재시험 결과 70점 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자
- 2)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제16조(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학칙 제40조에 의거 학점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1개월 이상 무기정학)하며 해당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통하여 득점할 수 없다.

제17조(무단 장기결석자의 처벌) 학칙 제37조에 의거 해당 학기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되는 수도 있다.

제18조(미등록에 대한 처벌)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되는 수가 있다.

제19조(성행이 불량한 자에 대한 처벌) 교내외에 폭행을 자행함으로써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는 학칙 제70조에 의거 퇴학 또는 기타 처벌을 받는다.

## 제 5 장 휴학,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중 납입금

제20조(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입대휴학으로 구분되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은 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21조(일반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 제21조에 의거 소정 휴학원을 제출하여(교의 진단서 첨부) 휴학할 수 있다(가사로 인한 휴학은 학년초 등록기간에 한한다).

단, 미제출자는 제적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학칙 제49조에 의거 휴학한 자는 다음 학기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22조(입대휴학) ① 학기 도중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병무청장)를 첨부하여 학칙 제23조에 의거 소정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제적된다.

② 입대휴학자는 학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납입금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학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년초 30일을 초과하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소정 복학원에 건강진단서(질병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1) 군제대로 인한 복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 2) 일반 휴학자가 기간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복학자는 학칙 제49조에 의거 당해 학기부터 납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입학) 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학칙 제43조(유급)에 의해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불허한다.
- ② 학칙 제19조와 제17조, 제16조에 의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는 당해 학과 신입생과 동일한 납입금을 1년간 납부해야 한다.
- 제2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5조에 의거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학칙 제26조).

## 제 6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26조 학적부의 기재사항이 호적부상과 틀릴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추가시험·재시험

- 제27조(추가시험) 학칙 제39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있는 바 소정원서에 사유서를 첨부(질병시에는 교의의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학년 지도교수를 경유한 후 사유발생 3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 학년말 성적이 D급일 때는 부총장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나 학년말의 재시험은 당해 학년에서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의 1/3 이내에 한하여 재시험 자격을 준다.

## 제 8 장 학생생활 지도

- 제29조(교목실) 본 대학교 성의교정의 교목신부 밑에 교목실을 두고 이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0조(학생의 건강상담) 본 대학교 성의교정에 교의를 두고 학생의 건강상담에 응하며 의료 보험 혜택 또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는다.
- 제31조(신상기록부 입력) 학칙 제14조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입학등록 완료 후 성의교정 홈페이지의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에서 신상기록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지도교수) 각 학년에 지도교수를 두고 학생의 지도를 담당한다.
- 제33조(장학금관리)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취급하며, 이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 ① 교내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 함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의 교직원, 동창생, 학생 또는 외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 및 확성기의 사용 등 높은 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집회행사 승인신청서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회하여야 한다).
- ②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의 책임자는 집회 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회가 끝난 후 즉시 부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위의 계획서 제출 및 보고는 문서로 학사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35조 교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를 게시코자 할 때에는 게시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기간은 1주일로 한다.

제36조 게시용지 규격은 25cm×45cm(신문지 1면)의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부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7조 외부기관 또는 개인이 광고, 게시, 인쇄물 배포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동아리 등록은 학생단체 조직 갱신승인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취임 동의서 1부, 활동 실적 보고서 1부, 당해 연도 활동계획서 1부,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를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일체의 행사를 금한다.

제39조 본 준칙을 위반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다.

## 부 칙

1. 본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교학위원회, 주임교수, 지도교수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준칙(제15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학생준칙 시행세칙

### 제 1 장 신상기록부, 학생증

제1조 신상기록부는 입학 시에 1부 출력하여 영구보존 한다.

제2조 학생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증 재발행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 2 장 단체, 게시, 인쇄물 배포

제4조 ① 본 교정에서의 단체의 범위는 학칙 제91조 단체에 한하며 그 구성요원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행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회 예정 3일 전까지 지도교수 경우 부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관이 허락되는 강당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실 및 강의실(이하 “강당”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의 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이를 금지 또는 취소한다.

### 3. 장학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

제2조(적용범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이하 “성의교정”이라 칭함)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사무 취급에 관하여는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에서 별정의 규정이라 함은 장학금 지급 단계에서의 특정한 지급 조건을 말한다.[개정 2009.3.1]

제3조(선정대상) 본 교정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3.1.]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가정의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한 자
4.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동문회, 공공기관 또는 외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자
6.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7.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
8. 교내 특정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로봉사한 자
9. 각급 학교 교직에 봉직하는 시, 도, 군 교육회원 본인 및 자녀
10.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9.3.1]

제4조(지급액) ①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의무부총장이 정한다.[개정 2009.3.1.]

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신설 또는 지급 중단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시는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가감 관리한다.[개정 2009.3.1]

제5조(심의기구 및 기능) ① 성의교정의 장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09.3.1.]

② 성의교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3.1.]

1.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학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학생의 선발 심의 및 추천
4. 장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5. 장학에 관한 기타 주요사항

제6조(선정순위) 장학금 선정순위는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신청자 중에서 교내장학금 시행지침에 따라 장학사정위원회의 추천의뢰를 거쳐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1994.2.8, 2009.3.1]

제7조(성적)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 재학생은 전학년도의 성적(간호대학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직전학기 성적)을 말하며, 성적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교부한다.[개정 2009.3.1]

제8조(신청)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지원팀, 간호대학은 간호대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14.4.17., 2019.6.20.]

1. 장학금 신청서
2. 전 학년도 성적증명서(단, 제3조 제3호 대상자는 제외, 간호대학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개정 2009.3.1.]
3.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
4. 기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9조(적격여부조사) 학사지원팀과 간호대행정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결과 자료를 성의교정 장학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개정 2009.3.1., 2014.4.17. 2019.6.20]

제10조(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우수 장학금은 1년간 지급한다.[개정 2009.3.1. 2019.6.20]

제11조(지급방법) 각종 장학금은 납입금 등록시 등록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정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필한 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2.8]

제12조(교외 장학금 관리) ① 교외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대상 학생을 지정하여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09.3.1.]

② 교외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대상 학생을 지정하지 않고 추천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추천 조건에 따라 당해 학년 지도교수에게 의뢰, 추천을 받아 의무부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3.1.]

③ 교외 장학금은 일단 재무팀에 입금 조치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한다.[개정 2009.3.1]

제13조(신청제한 및 지급 중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단,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
2.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아니 한 자
3. 휴학, 복학 또는 재입학 자 (단, 군입대 휴학자는 제외한다)[개정 2019.6.20.]
4.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 기준에 미달된 자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는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제14조(이중지급 금지) 각종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회수) 장학금지급 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자

제16조(지급절차) [삭제 2009.3.1]

제17조(취급)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의 사무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지원팀, 간호대학은 간호대행정팀이 취급한다.[개정 2009.3.1. 2014.4.17. 2019.6.20]

제18조(장학금기부) ① 성적우수 장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장학금은 학비감면 예산에 귀속된다.

② 전항의 장학금을 기부한 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학적부에 등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기념품 수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조 신설 2009.3.1]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3.1]

제19조(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3.1.]

②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 2, 3, 4와 같다. [신설 2017.12.27.]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며 발효와 동시에 이전의 장학생 선발 세칙은 폐기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개칭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의 명칭을 '성의교정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변경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9조, 제17조)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9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별표2, 별표3, 별표4)은 2019년 6 20 부터 시행하되, 2018년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정(별표2, 별표3)은 2020년 4월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신입생 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구분	장학금명칭	수혜대상	지급액 및 특전
정시 모집	간호대학 1%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영역 각각 1등급이면서 탐구(2과목)영역 백분위 평균 90%이상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간호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본교 자매결연 대학교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최우수 합격	합격성적 최우수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본교 자매결연 대학교 교환학생(자격자) 선발 시 우선권 부여
	부속병원	(의예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간호학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1년간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학과) 정시 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5% 이내인 자	1학기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의예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간호학과)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의예)1년간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간호)1학기 등록금의 반액(입학금 포함)
	수시 모집	최우수 합격	합격성적 최우수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부속병원		(의예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단, 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1년간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간호학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15% 이내인 자	1학기 등록금의 전액(입학금 포함)
		(의예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의예)1년간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간호)1학기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별표2] 교내 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금액	수혜기간
최우수합격	합격성적 최우수자 (단, ①입학 후 수혜자격은 재학 중 종합성적 85점 이상 유지한 자, ② 재학년간 동안만 지급하며 정당한 휴학이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등록금 전액	6년(의대) 4년(의전원) 4년(간대)
부속병원(교내)	신입생 중 각 대학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5%, 20% 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반액	1년(의전원) 1학기(간대)
성적우수	전 학년도(학기) 성적이 일정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반액 등록금 30%	1년 및 1학기
성적향상	전 전학년도(간호대학은 전 전학기) 평균 70점 이상인 자가 전 학년도(간호대학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점 이상 향상된 자(단, 타 장학금 비 수혜자로 휴학 없이 연속된 2개 학기)	100만원	1회
봉사	학생회 활동이나 학내 특수한 부서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록금 일부	1년 및 1회
학술연구	· 전국 학술연구발표대회 입상 또는 학내 학술연구발표대회 최우수자(팀) · 학술논문SCIE 제1저자(주저자)이며, 심사요건을 갖춘자(팀)	100만원(1인) 200만원(팀)	다음 학기 (1회)
옴니아(학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등록금 일부	해당 학기
옴니아(의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 일부	해당 학기
보훈(교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 단,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반액 (반액은 국가보조)	12학기(의대) 8학기(간대)
통일부(교내)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 단, 직전 2학기 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는 제외	등록금 반액 (반액은 국가보조)	12학기(의대) 8학기(간대)
가족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3개 교정 학부에 재학 중일 때 재학년 학생(학번, 생년월일 순) 단, 성적이 전 학년말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타 장학금 비(非) 수혜자	등록금 반액	해당 학기
가흥이	입학 후 가흥이(가톨릭대학교 홍보 도우미)모집에 선발된 자	학기당 30만원	홍보활동 시
국가근로(대학)	입학 후 특정한 부속기관(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근로시간에 따름	-
생활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의 수급자(새터민 포함 포함)	학기당 180만원	자격유지 시
글로벌	해외대학 연수생【예: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생】	1인당 (40~100)만원	1회
장애학생	장애 1~4급 이상으로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등록금 일부	해당 학기
학보사	입학 후 학보사 모집에 선발된 자	학기당 30만원	활동기간 중 학기별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금액	수혜기간
미래인재 스칼라십	미래인재스칼라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예산 내 차등지급	1회
하벳장학금	학습독려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학습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자	학기당 100만원 (1인당)	해당학기

[별표3] 교외 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연 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 번	장학명	장학분류
1	KSD나눔재단	성적우수	40	서울대교구	가계곤란
2	정수장학회	성적우수	41	영진 장학	가계곤란
3	일범청람	성적우수	42	우제 장학	가계곤란
4	한국지도장육성장학	성적우수	43	위드팜 생명존중	가계곤란
5	국가근로	학생조교/인턴십	44	유한재단	가계곤란
6	KRX국민행복재단	가계곤란	45	송악 장학	가계곤란
7	Peacemakers 장학	가계곤란	46	율리아(유순석)장학	가계곤란
8	故고수미장학	가계곤란	47	의대11회 동문	가계곤란
9	沁德김갑식동문장학	가계곤란	48	의대26회 동문	가계곤란
10	국가장학금 유형 I	가계곤란	49	의대27회 동문	가계곤란
11	국가장학금 유형 II	가계곤란	50	의대28회 동문	가계곤란
12	글로벌성형외과	가계곤란	51	의대30회 동문	가계곤란
13	간대22회 동문	가계곤란	52	의대 동창회 장학	가계곤란
14	거봉장학	가계곤란	53	이계실 장학	가계곤란
15	경동송천재단	가계곤란	54	이선량 장학	가계곤란
16	김난자 장학	가계곤란	55	미래인재육성재단	가계곤란
17	김진규 다니엘 장학	가계곤란	56	익명장학	가계곤란
18	내과연구재단	가계곤란	57	이철동문장학	가계곤란
19	단일시스템	가계곤란	58	조규철 장학	가계곤란
20	돈암장학회	가계곤란	59	조봉숙 장학	가계곤란
21	류덕희 장학	가계곤란	60	종익장학	가계곤란
22	미래의동반자재단	가계곤란	61	최선자 동문장학	가계곤란
23	보바스기념병원	가계곤란	62	추강 장학	가계곤란
24	보스코	가계곤란	63	캐쉬백포인트 장학	가계곤란
25	백송장학	가계곤란	64	하림장학	가계곤란
26	서울희망장학	가계곤란	65	한국쉐링(주)	가계곤란
27	성리카페인젤로 장학	가계곤란	66	한독제석재단	가계곤란
28	서송재단	가계곤란	67	한우리 장학	가계곤란
29	송파재단	가계곤란	68	한윤복 장학	가계곤란
30	신천동 성당	가계곤란	69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가계곤란
31	CMC신용협동조합	가계곤란	70	해춘장학	가계곤란
32	심봉섭-송승일 동문	가계곤란	71	해원장학	가계곤란
33	아산사회복지재단	가계곤란	72	후배사랑	가계곤란
34	안로사봉사장학	가계곤란	73	흰나리	가계곤란
35	양기섭 신부장학	가계곤란	74	환주장학	가계곤란
36	양영재단	가계곤란	75	필로메나	가계곤란
37	어도장학	가계곤란	76	KAMC해외연수장학	기타
38	오귀임 장학	가계곤란	77	김한중-가톨릭 의대,간대 산악부	기타
39	우덕재단	가계곤란	78	박인태-정금자	기타

연 번	장학명	장학분류	연 번	장학명	장학분류
79	메가스터디팀플	기타	102	가톨릭사회복지회기금	가계곤란
80	보훈	기타	103	나이팅게일장학금	가계곤란
81	주상용 외과장학	기타	104	의대발전기금장학금	가계곤란
82	통일부	기타	105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지역출신
83	군위탁	기타	106	(재)경주시장학회장학금	기타
84	장준환 동문장학	기타	107	농협인재육성	기타
85	부산서구장학회	지역출신	108	메가스터디 고등이러닝	기타
86	백운장학회	지역출신	109	메가엠디장학금	기타
87	남양주 장학재단	지역출신	110	복사실장학금	기타
88	과천시 애향장학	지역출신	111	삼성드림클래스장학금	기타
89	서귀포시 장학	지역출신	112	이투스교육 장학금	기타
90	양산시 인재육성장학	지역출신	113	춘혜장학금	기타
91	포천시인재장학	지역출신	114	행복기숙사장학금	기타
92	창원시진해장학	지역출신	115	(재)관우장학금	기타
93	인천시인재육성장학	지역출신	116	(재)중구월드장학	지역출신
94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지역출신	117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지역출신
95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지역출신	118	의대 34회 동문	가계곤란
96	경기도민회장학	지역출신	119	임우갑, 주계업	가계곤란
97	제주국제회장학재단	지역출신			
98	부천시장학회	지역출신			
99	은평구민장학재단	지역출신			
100	서울제주도민회장학금	지역출신			
101	종로구장학회	지역출신			

[별표4] 국가장학금 종류 <신설 2017.12.27. 개정 2019.6.20>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내역	선발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책정	한국장학재단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II유형	소득분위 0~8분위 해당 재학생 * 셋째 아이 이상 우대	본교 별도 책정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별도 선발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입학금감축 대응지원	입학금의 일부 지원	한국장학재단 책정	한국장학재단 지침 기준에 따름

## 4. 학생병사안내

### 1) 재학생 입영연기

#### 가. 입영연기 대상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연령(의과대학 27세, 의학전문대학원 28세)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 나. 입영연기 제한

- ① 퇴학, 제적된 자
- ②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③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다. 연기절차

- ①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②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장에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 처리

### 2) 학적변동자

입영연기 중인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 총원 계획에 따라 입영시키게 된다.

가. 제적, 퇴학된 자

나.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다. 복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자 : 학적변동으로 통보된 자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통보에 의거 다시 재학 입영연기 처리(입영하였다가 귀향한 자도 같음) 된다.

### 3) 입영(소집)원 출원

가. 대학 재학 중 군 입영(소집)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여야 된다. 현재 재학생으로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입영 대기기간이 단축된다.

- ① 출원기간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 ②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 ③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서류 바로가기 -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나.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처리

입영원 출원자는 본인의 희망시기에 입영 조치하되, 입영 희망시기가 출원일로부터 너무 빠르면 군 입영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영 희망시기

입영 희망시기는 입영(소집)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희망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단, 19세인 자는 입영 희망시기를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한다.

- ※ 10월 31일까지 출원자 : 당해년도 일반자원과 같이 처리하되 입영(소집)원 출원시 입영희망시기를 다시 반영
- ※ 그 이후 출원자 : 별도 입영(소집)원 출원자로 처리

#### 4) 입영일자의 연기절차

##### 가. 출원대상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자 제외)

사유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대학 편입학</li> <li>• 유학</li> <li>• 장학생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과)</li> <li>• 학군무관후보생 지원</li> <li>• 학교장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질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병간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계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험표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친권자의 사실 확인서</li> <li>• 기타 필요한 증명서</li> </ul>

##### 나. 출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 - 재학생입영신청서(취소, 변경)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 5) 병역처분변경원

병역처분변경원(구. 특수전면역원)은 입영이 결정되어 영장이 나오려는 상태에서 특수한 사정(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재학 중에는 제출불가)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주소지 시, 구, 군,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첨부서류 : 병사용진단서)

## 6)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 가. 의무사관후보생(병역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및 병역법 제34조)

#### (1) 지원자격

- 가)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치·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인턴(기초교실포함)으로 채용된 사람중 33세가 되는 해 2월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2) 지원절차

수련기관별로 취합하여 매년 2월경에 병무청장에게 제출

#### (3) 구비서류

- 가) 해당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인턴)지원자 명단
- 나)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5번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
- 다) 신원진술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27번 신원진술서)

#### (4) 병적편입 통보

- 가) 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수련기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나) 수련기관의 장은 선발결과를 본인에게 통지

#### (5) 입영 신체검사

- 가) 입영일부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며 병명과 질병상태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귀가자 명부 등을 지방병무청장에 보고
- 나)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 치유 기간 필요시 귀가 조치됨.

### 나. 공중보건의사 지원절차

#### (1) 지원자격

- 가) 의·치·한의사 자격을 가진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지원절차

국시 발표일로부터 매년 2월 10일까지 출신학교장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또는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직접 지원

(3) 구비서류

가) 해당년도 공중보건의사 지원자 명단

나)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4번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다)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는 신원진술서 작성 불필요.

(4)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해야 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 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5) 벌칙

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형사처벌 후 잔여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나)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이탈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연장 근무

# 현역·대체 복무지원서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급
			역종 [ ] 현역 [ ] 보충역
국적관계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외국국적 국가명 : )
			[ ] 외국국적 (외국국적 국가명 : )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전공학과
			학교 소재지
	대학고		입학연월
	대학원		졸업(수료예정) 연월
			학업 상태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 ]재학 [ ]퇴학 [ ]수료 [ ]졸업
지원사항	의무·법무·수위사관후보생		[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계열 : [ ]의과 [ ]치과 [ ]한의과)
			[ ]법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 ]수위사관후보생(수련기관 : )
	[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5급 공채 구분( )	소속 부처(전화: )
	대체복무	[ ]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위사

「병역법」 제34조·제34조의6·제34조의7·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현역·대체복무를 지원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위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 병무청장 귀하

지원자 제출서류	1. 의무·법무·수위사관후보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2.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 없음 3.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 없음. 다만,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 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위사: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무·법무·수위사관후보생 지원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뒤쪽)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input type="checkbox"/> 현역 대체복무 지원서 (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작성요령	1. <input type="checkbox"/> 표는 V로 표시 2. 신청일자, 본인성명,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의무사관후보생 - 신원진술서 1부. 2. 법무사관후보생 - 신원진술서 1부. 3.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 없음 4. 공중보건건의사·징병전담의사 - 없음, 단,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건의사 지원시 수련이수증명 첨부 5. 공익법무관 -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제출(경유)기관	처리기관 병무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신청서 작성</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5%; text-align: center;">                     해당기관                      • 수련기관장                      • 사법연수원장                      • 국회사무처장                      • 법원행정처장                      • 행정자치부장관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출신(재학)대학의장                      (공중보건건의사)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접 수</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 margin: 0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결과 통보</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5%; text-align: center;">결과 통보</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5%;">결 재</div> </div>		

## 5. 의료복지제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의를 두고 건강상담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과 학생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지정된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의료복지 제도가 있다.

교의 : 성의교정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창욱 교수

### 1) 정기 신체검사

- ① 대상 : 신입생을 제외한 전 학년
- ② 시기 : 매년초 소정기간 중에 실시
- ③ 장소 :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본관 4층)
- ④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비 고
기 본 검 사	신장, 체중, 시력, 혈압	
흉 부 X 선 검 사	직접 촬영	
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력검사</li> <li>• 뇨검사(노당, 뇨단백)</li> <li>• 혈액검사(혈색소, 간기능 AST, ALT)</li> </ul>	

### 2) 진료비 감면혜택

- ① 지정 병원 : 가톨릭대학교 8개 부속병원
- ② 이용절차 : 해당과에 초진일 경우 제1,2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와 “진료비 감면 번호”를 학생증과 같이 수납창구에 제시해야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 ③ 혜택 : 학생들은 다음 표와 같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보 험 환 자	일 반 환 자
초진료, 재진료 100%	초진료, 재진료 100%
급여 항목 30%	비급여 항목 30%(진료목적일 경우)

### 3) 재학생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 담보위험

- ① 학내·외 치료비 추가특별약관(보상한도액 : 1사고당 / 2백만원)  
우리 대학교 학생이 학교 활동 중 학교 내외(국내만 해당)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그 치료비에 한해 보상하는 보험
- ② 신입생 담보 : 입학 전 신입생들의 학교 행사 중 사고에 대해 치료비 보상
- ③ 연구활동조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보험 : 연구활동 및 실험, 실습중 발생한 사고(학부교과 과장인 현장실습(병원)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